

# 延邊의 韓族에 대한 基礎研究

全海宗 李承旭 金翰奎<sup>1)</sup>

## 〈 目 次 〉

- |   |                             |
|---|-----------------------------|
| I. 序言                                       | 3. 延邊朝鮮族自治州의 民族區域自治 實行      |
| II. 間島(延邊) 韓族에 대한 歷史研究와 그 問題點 - 民族史의 觀點에서 - | 4. 民族區域自治의 原則과 實際           |
| 1. 間島 前史 - 17세기까지 -                         | IV. 延邊朝鮮族의 言語實態와 그 特性       |
| 2. 間島 歸屬問題                                  | 1. 朝鮮族의 言語生活                |
| 3. 韓人의 移住와 民族運動 및 文化運動                      | 2. 朝鮮族의 言語問題에서 제 기되는 특수한 現象 |
| 4. 韓人의 共產主義運動과 延邊自治州의 成立                    | 3. 漢語化 現象                   |
| III. 延邊朝鮮族自治州의 民族區域自治                       | 4. 새 語彙의 增加 現象              |
| 1. 延邊朝鮮族自治州의 設立                             | 5. 朝鮮族의 言語 規範化              |
| 2. 民族區域自治制의 原則과 精神                          | V. 結 論                      |

1) 이 논문은 1990년도 문교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이 연구는 全海宗 李承旭 金翰奎 등 3인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었음.

## I. 序 言

韓中關係의 획기적 변화에 따라 中國내의 韓族 즉 '朝鮮族'의 존재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거의 없다. 상식적인 지식의 정리와 소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國內學者들에 의한 학술적인 체계적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2)</sup> 海外에서는 특히 '朝鮮族'學者들에 의한 약간의 學術研究가 있었지만,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論議의 범위와 방향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中國내의 韓族은 移住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延邊 즉, 間島와 그 부근에서 集居해왔으며, 지금도 人口의 半數정도가 이곳에서 集居하고 있다. 또한 延邊은 '朝鮮族自治州'라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곳의 朝鮮族은 이른바 '民族區域自治'를 향유하고 있다. 延邊에서 集居하면서 自治를 향유해온 朝鮮族은 그들의 고유한 文化, 특히 言語를 보존해 왔다. 따라서 中國내의 韓族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間島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民族史的 접근이 필요하고, 延邊朝鮮族自治州에 대한 制度史的 이해도 필요하며, 延邊 朝鮮族이 고유한 言語를 보존하는 상태에 대한 言語學的 정리도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처음부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왕의 연구성과가 거의 全無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작업이니 만큼, 보다 創意的인 수준의 연구를 준비하기 위한 '基礎研究'가

2) 中國내 韓族에 관한 內國人的 글로는 李泳禧의 "少數民族政策과 中國속의 韓民族" (<中共, 어제와 오늘>, 東亞日報社, 1977), 蘇致聲의 "中共의 少數民族政策과 中共內 韓民族" (<中國研究> 4, 1985), 李埰진의 <中國안의 朝鮮族>(청계연구소, 1988, 서울) 등이 있으나, 전문적 연구논문이나 연구서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문적 학술논문으로 몇편의 學位請求論文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出版되지 않아서 역시 논의하기 어렵다.

될 것이다. 韓族의 間島開拓에 대한 民族史的 접근은 우선 관계되는 基本史料들을 발굴 정리하고 기왕의 연구성과들을 研究史的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주요한 問題들을 점점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延邊朝鮮族自治州에 대한 制度史的 접근은 民族區域自治의 제도적 규범과 그것이 延邊朝鮮族自治州에서 실행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制度의 原則과 實際의 乖離現象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延邊 朝鮮族의 言語實態에 대한 言語學的 접근도 그 '漢語化와 民族語化의 葛藤'現象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처했던 특수한 역사적 환경과 생활조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II. 間島(延邊) 韓族에 대한 歷史研究와 그 問題點

### 一 民族史의 觀點에서 一

本章은 間島(延邊)의 韓族에 대한 歷史研究의 成果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하여는 뒤에서 敘述할 바이지만 미리 문제점의 윤곽에 대하여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地域의 名稱으로서의 間島와 延邊에 관한 문제다. 間島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명확한 區劃을 가리키는 엄격한 地名은 아니며 종래로 주로 韓國人과 日本人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며 北間島와 西間島로 나뉘었다. 北間島는 白頭山 동북쪽의 豆滿江 대안의 延吉 和龍 琿春 汪清의 4縣을 가리키고 西間島는 그 서남쪽 즉, 주로 압록강의 대안 일대로 安圖 長白에서 通化 韓安 등 여러 縣에 걸치는 지역을 일컬었다. 단순히 間島라고 하는 경우에 북간도를 주로 가리키며 國境紛爭으로서의 間島問題의 간도가 그곳이다.

延邊은 清代 延吉府의 邊境이라는 뜻으로서 대체로 延吉 和龍 琿春 汪清의 4縣 즉 北間島 또는 좁은 뜻으로서의 間島와 같다. 延邊朝鮮族自治

州의 領域은 위에서 말한 4縣(그 중에 延吉縣은 후에 龍井縣으로 改稱) 외에 그 서쪽의 敦化縣과 安圖縣을 포함하게 되었다. 延邊이라는 말은 中國側과 때로는 延邊의 韓族이 사용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間島와 延邊의 含蓄性을 살리기 위하여 이들은 混用하며, 自治州 성립 이후에 관하여는 自治州 또는 延邊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둘째의 문제는 韓族이라는 말이다. 中共에서는 그 支配하의 韓族에 대하여 ‘朝鮮族’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韓族 또는 韓民族을 지칭하는 用語는 ‘朝鮮民族’이다. 종래로 韓人에 대한 칭호로서 ‘高麗人’이라는 말을 많이 썼으나, 이 말에 蔑視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 까닭이라고 믿어지지만, 8.15후 朝鮮族의 희망에 따라서 이 말을 쓰지 않고, ‘朝鮮族’이라고 칭하게 되었다.<sup>3)</sup> 한편 日本人들이 자주 쓴 ‘鮮人’도 蔑視의 뜻이 포함되어

3) 黃有福, <中國朝鮮民族研究>(以下 <黃書>로 略함. 沈陽, 1989) p.7 참조. 本稿에서 言及하는 文獻중에서 중요한 것에 대한 略稱은 다음과 같다.

- <柳著> 柳光烈, <間島小史>(서울, 1933)
- <申著> 申基碩, <間島領有權에 관한 研究>(서울, 1979)
- <間島案> 固大亞細亞問題研究所,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第8卷 間島案 1906-1909>(서울, 1974)
- <拔萃文書> 韓國圖書館,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서울, 1875)
- <獨立運動> 朴永錫, <在滿韓人獨立運動史研究>(서울, 1988)
- <獨立軍史> 尹炳奭, <獨立軍史>(서울, 1990)
- <民族運動> 朴환, <滿洲韓人民族運動史研究>(서울, 1991)
- <簡史> 同書編寫組, <朝鮮族簡史>(延吉, 1986)
- <州概況> 同書執筆小組,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延吉, 1984)
- <革命史> 黃龍國 主編, <朝鮮族革命鬭爭史>(沈陽, 1988)
- <人物傳> 韓俊光 主編, <中國朝鮮族人物傳>(延吉, 1990)
- <文化> 金東勳 等, <延邊朝鮮族教育史稿>(長春, 1989)
- <教育史> 연변대학, <발해사연구 제1집>(延吉, 1990)
- <游海史> 金奎方等 主編, <延邊經濟史>(延吉, 1990)
- <調查錄> 沈茹秋, <延邊調查實錄>(延吉, 1987)
- <歷研論> 中國朝鮮史研究會 編, <朝鮮歷史研究論叢 一>(延吉, 1987)
- <族研論> 延邊大學民族研究所 編, <朝鮮族研究論叢 2>(延吉, 1989)

있다. 本稿에서는 韓人 혹은 韓族이라고 함을 원칙으로 하되 典據에 따라서 朝鮮人, 그리고 中共治下의 韓族에 대하여는 朝鮮族이라고 敍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째로는 國際的 政治關係와 관련된 문제다. 間島는 地理上 韓國과 中國의 사이에 위치하고, 민족적으로 韓族의 移住地며, 후에는 日本의 세력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여, 서로 關心이 깊고 利害가 相反되어 각기의 주장이 다르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넷째로 특히 중요한 문제는 史料와 政治적 觀點에 따른 것이다. 日本側 기록도 日本 外務省, 朝鮮總督府 그리고 間島地方의 日本官憲의 記錄 등 광범하며, 中國側의 기록은 清末에서 中華民國期에 걸쳐서 滿洲 특히 間島地方의 行政機構의 변화가 많아서 그 기록이 雜駁하다. 한편 8.15전 의 間島의 韓人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言論紙와 圖書, 文書 등의 대부분이 散逸되고 말았다. 현재 間島 龍井의 舊日本總領事館, 즉 현 龍井市 人民政府 構內에 日帝時의 文書가 다수 보관되어 있다고 傳聞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은 널리 이용되고 있지 않다.

政治的 觀點에 관한 문제는 앞의 셋째에서 言及한 바와 관련이 있으나, 특히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民族主義와 共產主義運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民族運動에 관하여는 주로 한국내의 학자들의 저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공산운동에 대하여는 延邊에서 근래에 많은 저술이 나왔다. 中共의 治下에 있어서의 저술이기 때문에 한편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나, 공산주의 특히 중국 공산당에 대한 편견이 심하여 민족운동에 대하여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고 또 왜곡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 점이 특히 유의하여야 할 문제점이다

- 
- |        |                                   |
|--------|-----------------------------------|
| 〈延邊歷研〉 | 延邊歷史研究所 編, 〈延邊歷史研究 第1輯〉(延吉, 1986) |
| 〈牛丸著〉  | 牛丸潤亮 著, 〈最近間島事情〉(京城, 1927)        |
| 〈條田著〉  | 條田治策, 〈自頭山定界碑〉(東京, 1938)          |
| 〈在滿鮮人〉 | 朝鮮總督府警務局, 〈在滿鮮人 支那官憲〉(京城, 1930)   |
| 〈事情梗概〉 | 在間島日本總領事館, 〈間島 片影〉(? , 1933)      |

그밖에 簡體字에 관한 문제도 있다. 본고에서는 간체자를 본래의 字體 즉 번체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약간의 예외가 있다. 예를 들면 地名인 瀋陽은 現用을 따라서 沈陽으로 적기로 한다.

本稿는 다음과 같이 몇개의 節로 나누어 서술하려고 한다. 즉 韓族과 관련된 間島地方의 前史로서 대체로 17세기까지, 다음에 白頭山 定界碑 문제에 시작하여 이른바 間島協約 까지의 間島 문제, 다음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韓人의 移住와 간도에서의 韓人의 文化運動과 民族運動,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 끝으로 8.15 이후의 自治州의 성립에 대하여 그 역사를 개관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 1. 間島 前史 - 17세기까지 -

間島地方에 古代에 居住한 種族으로서 肅慎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肅慎과 朝鮮을 同音異寫라고 설명하는 일이 있었다. 즉 朝鮮과 息慎 肅慎 그리고 珠申 女眞 朱里眞이 다 同音異寫라고 하는 것인바,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sup>4)</sup> 더욱이나 肅慎人의 實在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즉 <國語>나 <左傳> 등 古典에 肅慎이 枯矢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을 토대로 後代의 邑婁와 관련시켜서 그 系譜 관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나, 이에 관한 구체적 증거는 없으며 따라서 肅慎의 實體에 대하여는 부정적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거론할 수는 없다.

高句麗가 건국하기 전에 間島는 北沃沮의 住地였는데 <三國史記>에 보면, 고구려의 始祖王 10年(28 B.C)에 사람을 보내서 북옥저를 멸망시켰다고 하였으며(高句麗 本紀 1), 이때에 이 지역에 柵城을 설치한 것이라고 믿어지며, 太祖王 46년(A.D. 98)에 王이 東巡하여 柵城에 이르렀으며, 4년 후에 다시 使臣을 보내어 이 지방을 안무하였다. 책성은 후의 東京 龍原府로서 지금의 琿春縣이다.<sup>5)</sup> 즉 琿春地方이 고구려의 영역의 동

4) 註1에서 든 <黃書> p.3에서 이에 言及하고 否定하고 있다.

5) 李殿福 孫玉良 共著, 姜仁求 金瑛洙 共譯, <高句麗簡史> p.136(原文은 p.379d)

쪽 끝이었으니 間島地方이 다 고구려에 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高句麗의 族屬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없으나, 다만 廣開土王碑의 研究로 잘 알려져 있는 王健群은 臆說을 提起하고 있다. 그는 ‘高句麗族屬探源’<sup>6)</sup>이라는 論文을 발표하였는데, 紙面3面の 小論으로 대체로 文獻의 敘述이나 結論부분에서 앞의 서술과는 거의 관련 없이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으며, 부여는 肅愼 계통의 濛古스족, 즉 후의 女眞族으로서, 高句麗人도 당연히 肅愼人의 후예이며 女眞人과 同一 族屬’이라고 斷定하고 있다. 그의 廣開土王碑의 研究가 상당한 勞作인 것만큼, 이와 같은 그의 臆說이 學界에 미치는 影響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7세기 말에 中國의 東北 즉, 滿洲에 大國을 세운 渤海는 지금의 吉林省과 遼寧省의 大部分(西쪽은 契丹의 領域과 접하였다)과 黑龍江의 일부 그리고 韓半島의 北部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의 延邊은 당시의 東京龍原府와 中京顯德府의 治下에 있었다. 延邊 각지에서는 당시의 古城과 古墳이 많이 발견되고, 발해의 제3대 文王大欽茂의 2女 貞惠公主와 4女 貞孝公主의 墓가 8.15 이후에 발굴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言及하려고 하는 것은 발해 王室의 族屬에 관한 문제다. 종래로 한국에서는 발해의 건국자 大祚榮은 대체로 靺鞨계的高구려人으로서 고구려의 遺將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하여, 中國의 학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異口同聲으로 발해人은 물론하고 그 王室도 靺鞨族이라고 보고 있다.<sup>7)</sup> 延邊大學의 ‘발해사연구실’에서 펴낸 <渤海史研究> 제1집(1990)에는 10여편의 발해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발해 왕실의 족속에 관한 것으로서 金喬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舊唐書>의 記錄을 버리고 <新唐書>의 설을 따라서 <신당서>의 저자

6) <學習與深索> (哈爾濱時郵局 發行) 1987年 6期 所收.

7) 이 점에 대하여 拙稿 ‘東北史에 대한 中國에서의 研究’(<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第29집, 1990), 특히 pp.187-189 참조.

는 확실한 사료에 근거' 하였다고 하며 '발해 왕실의 大씨는 속말말갈족에 속한다'라고 단정하고 있다.<sup>8)</sup> 그러나 '확실한 사료'가 무엇인가는 밝히지 않았고, 또 <신당서>가 성립된 당시의 북방민족의 흥기와와 관련에서의 時代性的의 문제나, 그 撰者인 歐陽修의 國家意識 등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言及도 없다. 발해 왕실의 족속문제의 해명을 위하여서는 넓은 視覺에서의 史料批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1세기 초에 발해가 망하고 이 지역은 女眞族의 장악하에 들어갔다. 여진족이 자주 高麗의 東北을 침범하자 고려의 睿宗 2년(1107)에 尹瓘이 17만의 대군으로 여진족을 정벌하여 豆滿江 이북 7백여리를 개척하고 멀리 先春嶺(지금의 延邊 북방의 寧安縣)에 石碑를 세우고 또 9城을 쌓아서 여진에 대비하였다. 그 후 고려는 9성을 여진족에게 돌려주며 그들을 회유하였다.

豆滿江北의 지방은 朝鮮王朝의 龍興의 地이기도 하다. <龍飛御天歌>(제3장)에 의하면 太祖의 五代祖 穆祖는 元에 入仕하여 南京五千仁所의 達魯哈赤가 되었고 또 '穆祖 在 幹東 云云'하여 목조가 幹東을 근거로 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幹東은 間島를 뜻하는 것이라고 믿어진다.<sup>9)</sup>

한편 이 豆滿江北의 지방은 清朝의 發祥地이기도 하다. 清朝의 祖上이라고 일컬어지고 후에 濟에 의하여 肇祖 原皇帝에 追封된 猛哥帖木兒는 1400년 경에 이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한 때 朝鮮에 복속하여 그 軍職을 받았으나 후에 明에 귀순하여 建州左衛의 指揮使가 되었다.<sup>10)</sup> 그의 후에

8) 이 논문은 본래 中國語로 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崔泰吉이 우리 말로 옮긴 것이다. 특히 pp.258-264 참조.

9) 이 점에 관하여 <申著> p.2, <牛丸著> pp.3-4에서 敘述하고 있는데, '幹東'을 前書에서는 龍飛御天歌의 音註를 따라서 '오동'이라고 音讀하고 後書에서는 '幹東'이라고 하였다. <牛丸著>(p.2 이하)에서 間島의 名稱에 관하여 間土, ?島, ?土, ?島 등에 言及하고 있다.

10) <明代 名人傳(Dictionary of Ming Biography)> (New York, 1976) 所收의 그의 傳記 참조. 本書의 本項은 筆者의 執筆이다.

와 그밖의 여진족은 그후 때로는 조선에 순종하였으나, 침구하는 일도 자주 있어서 조선은 여러번 이들을 정벌하였다.

世宗은 猛哥帖木兒가 죽은 뒤 豆滿江 하류지방에 6鎮을 두고, 江北에 行城을 修築하여 여진족은 그 밖에 살며, 韓人은 함부로 行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間島지방은 조선의 조정에 의하여 일종의 閑荒地라고 인정되고 있었다. 한편 猛哥帖木兒의 後裔가 세운 淸朝는 中國에 入關한 후 南滿洲에 柳條邊牆이라고 하는 防柵을 설치하여 漢人과 蒙古人의 월경을 방지하며 그 祖上들의 이른바 聖地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이 변장 내의 대부분의 지역은 사실상 황폐하여 갔다. 특히 漢人과 몽고인들의 본거지와 먼 거리에 있는 間島지방은 더욱 그러하였다.

이와 같이 間島는 朝鮮의 王室과 淸室의 祖上의 發祥地이며, 또한 두 나라에 의하여 閑荒地로 看做되어 왔다. 이것이 後日 間島의 歸屬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 2. 間島歸屬問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間島는 朝鮮王朝와 淸室의 發祥地임에도 불구하고 兩側이 다 같이 이 地方을 等閑視하여 일종의 閑荒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北方의 韓人들은 生計를 유지하기 위하여 渡江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淸側은 이를 그 領域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定界碑를 세웠으나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지 못하여 그 후에 數次에 걸친 勘界交涉이 進行되었다. 그러나 그 交涉도 合意에 이르지 못하던 중에 이른바 乙巳條約으로 朝鮮政府는 外交權을 상실하고, 그 외교권을 장악한 日本은 滿洲에 대한 帝國主義 進出을 위한 對價로 間島의 領有權을 淸에 讓步하고 말았다.

間島의 領有權에 대하여는 申基碩 <間島領有權에 대한 研究>에서 상세히 검토되고 있으며, 前掲 <間島案>의 '解題'에도 그것이 要約되어 있다. 中國側의 間島歸屬問題에 대한 연구로는 李峰著 韓俊光 校註의 <延邊略

史》<sup>11)</sup> 있으나 簡略하며, 中國側 立場에 치우치고 있다. 韓俊光 高興民 李鐘官 <延邊近代大事記>(1712-1911)<sup>12)</sup>는 康熙年間の 穆克登의 查邊 立碑에서 清末까지의 清側의 施策과 延邊에서의 중요한 事件을 月日을 표시하며 年代記로 기술하여 앞의 논문을 보충하고 있다.

間島問題에 관련된 兩側의 文書 즉, 基本史料는 실로 방대한 것인데 그중에서 舊韓末의 일부 문서만 정리되어 간행되었다. 그것이 앞에 든 <間島案>과 <拔萃文書>다. 그러나 그 이전의 史料는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한편 中國측의 문서도 中央政府 地方政府 및 軍部の 기록이 또한 방대한 것이라고 믿어지나 심한 中國내의 정세의 변동으로 지방의 기록은 물론 하고 중앙의 기록도 出版은 고사하고 整理도 되어있지 않다고 믿어진다. 다만 日本의 間島 進出 이후의 文書는 현재 延邊 龍井市の 人民政府 내에 보관되어 있다고 傳聞하고 있다.

다음에 間島歸屬問題의 推移에 대하여 주로 <申著>에 의하여 그 大勢를 略述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이 6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1) 閑荒地와 越境

朝鮮王朝 初期 즉 太祖 太宗 世宗代에 적극적으로 女眞族을 懷柔 招撫하여 朝鮮의 威勢가 豆滿江北의 女眞族에 미쳤으나, 그 후 朝鮮이나 清이 다 같이 이 地域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일종의 閑荒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丁卯와 丙子の 胡亂의 和議로 兩國은 ‘各全封疆’ 또는 ‘各守封疆’이라고 하여 雙方이 그 領土를 존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후 朝鮮의 北邊의 住民들은 渡江하여 人蔘을 採取하거나 狩獵을 하고 또는 木材를 伐採하는 일이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淸人을 殺害하고 財貨를 掠奪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朝鮮은 肅宗 11년(1685)에 咸鏡監司를 問罪하고 그 다음 해에 禁命을 내리기도 하였다.

11) <延邊歷研> 第1輯 (1986) 所收

12) 同上 第3집(1988) 所收

## (2) 定界碑의 建立

이에 앞서서 淸은 康熙 23년(1684)에 駐防協領 勒出 등을 시켜서 淸室 祖上의 發祥地인 長白山을 踏査케 한 일이 있고 그후 두나라 사이에 이른바 犯越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肅宗 36년 즉, 淸 康熙 49년(1710)에는 平安道民이 竊경하여 淸인을 살해하고 人삼들을 挾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兩國이 會同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아울러 鴨綠江 土門江 일대의 邊界를 查明하기를 하였다. 다음 해에 康熙帝가 내린 上諭에서 國境 문제에 대하여 '鴨綠江의 西北은 中國, 東南은 朝鮮의 領土며, 土門江은 長白山으로 부터 發源하여 東南을 향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데 그 西南은 朝鮮, 東北은 中國'<sup>13)</sup>이라고 恣意로 宣言하였는데, 그 후 淸은 이것을 근거로 國境 문제를 論하여 이것이 間島歸屬 문제의 爭點이 되는 것이다.

淸은 兩江 사이의 不分明한 地方만 共同調査하겠다고 主張하였는데, 조사의 地點, 通路 등에 대하여도 兩側의 意見이 一致하지 않았다. 그해 5月말에 양측은 淸人 살해의 現場인 渭原 對岸의 吾老梁의 現場에 가서 조사를 하였다.

다음 해(1751)에 淸은 烏喇總管 穆克登을 보내서 查邊하기로 하자 朝鮮도 權尙遊(후에 朴權으로 교체)를 接伴使로 任命하였다.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그해 5월 15일에 白頭山 天池로부터 十里 아래의 分水嶺 위에 定界碑를 세웠다. 碑의 크기는 높이 2尺餘, 폭 1尺餘의 것이며, 내용은 淸의 穆某가 查邊하여 '西爲鴨綠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勒石爲記'라고 하고 日字와 양측의 官員과 通官의 姓名을 列記한 것이다. 이 定界碑를 건립한 곳이 명확한 分水嶺이 아니었기 때문에 境界問題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한편 朝鮮측에서는 그후에도 越境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13) 肅宗實錄 卷50上, 37년 3월 甲午 참조.

## (3) 封禁과 流民問題

淸은 入關후 그 發祥地인 滿洲가 황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順治 10년(1656)에 遼東招民開墾條例를 발표하여 漢人의 만주 移住를 장려하고 이 지방을 開拓케 하며 遼陽府 奉天府 등을 두어 民治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漢人들이 만주를 占有하고 한편 陵墓 園場들이 侵犯되는 것을 꺼려서 康熙 7년(1668)에는 그 條例를 폐지하고 乾隆(1736-96) 初年에는 流民을 刷還할 것과 유민의 嚴禁을 명하였다. 그러나 流民은 계속하여 採蔘, 木材盜伐, 砂金採掘을 하고 道光年間(1821-50)에 이르러서는 定着하여 土地를 開墾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遼東地方에서 鴨綠江 연변 그리고 輝發地方을 거쳐서 間島方面에 까지 이르렀다. 한편 韓人들은 이미 1830년대에 豆滿江을 건너서 間島東部の 春地方과 沿海州 방면에 이주하는 자가 생겼다. 당시 沿海州는 淸의 領土였으나 1860년에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다.

朝鮮에서는 哲宗 11년(1860)부터 北關地方에 大水害가 수년간 계속하였고, 國內 각지에 疾病이 퍼지고 三南의 民亂까지 일어났고, 高宗 6년과 7년(1869, 70)에는 大凶作이 겹쳐서 間島와 露領에 이주하는 자가 많아졌다. 露領에만 1869년에 근 800戶, 1884년에는 1700여호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朝鮮은 大院君의 鎖國策으로 러시아와의 開交를 거절하고 있던 때였으며, 滿洲에 대한 移住民과 露領에 있는 移住民에 대한 交涉은 淸의 地方官을 통하여 행하여졌으며 일부 移住民을 刷還한 일이 있으나 流移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4) 勘界交涉

淸은 光緒 7년(1881)에 吉林省 南部의 禁山에 대하여 招民開墾을 허가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韓民의 流移住와 國境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淸의 督辦 吳大澂이 越境問題에 대하여 朝鮮에 咨文을 보냈다. 西北經略使 魚允中은 수차에

걸쳐서 사람을 파견하여 定界碑를 踏査하고 또 間島地方을 시찰케 하였다. 이 刷還 문제로 인하여 高宗 22년 乙酉(1885)와 24년 丁亥(1887)의 兩次的 勸界交涉이 행하여졌으나,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제1차의 교섭은 1885년 9월에 安邊府使 李重夏와 淸의 德王 사이에 회담하였으나 진전이 없었고, 10월에는 茂山에서 회담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양측은 豆滿江 上流의 西豆水, 紅丹水, 紅土水를 分探하였다. 淸은 土門 圖們 豆滿이 같은 江이라고 주장하였고, 朝鮮은 土門江의 下流가 松花江으로 流入하기 때문에 그것을 境界하고 생각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1887년의 勸界는 淸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는데, 淸의 強壓的인 태도에 對하여 李重夏는 이를 反駁하여 淸은 紅丹水를, 朝鮮은 紅土水를 分界로 주장하여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 (5) 그 후의 兩國의 對策

兩次的에 걸친 勸界交涉이 실패한 후 淸은 韓民의 刷還이 실제로 곤란한 것을 깨닫고 반면에 韓民에게 辮髮과 易服(淸服을 着用)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토지를 몰수하고 豆滿江 이남으로 축출하였다. 그래도 江北에 남은 韓民은 高宗 31년(1894)에 2만명을 넘었다는 청측의 보고가 있는데 實數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淸日戰爭(1894-95)에서 淸이 패하자 朝鮮은 적극적으로 定界와 分界, 流移民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光武 4년(1900)에 韓國은 移住者의 보호를 위하여 豆滿江 연안 각지에 鎮衛隊를 두고 다음 해에 會寧에 邊界警務署를 두고 茂山과 鐘城에 分署를 두었다.

光武 6년(1902)에는 觀察使 李範允을 파견하여 移住民을 위무하고 戶口를 조사케 하였다. 그는 간도에 들어가서 韓民의 戶籍 52冊을 만들고 不動產의 價値도 조사였다. 한국은 그를 다음 해에 間島管理使로 任命하고 이 사실을 駐韓淸國公使에 통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兩國간에 間島歸屬 문제가 다시 중대한 안건으로 부상하였다.

## (6) 韓國의 外交權 상실과 日本의 艱苦領土權 讓與

光武 9년(1905) 러일전쟁에 승리한 日本은 韓國에 강요하여 이른바 乙巳保護條約을 체결하여 韓國의 外交權을 박탈하고 그해 12월에 日本은 韓國에 統監府를 설치하였다. 다음 해에 韓國政府가 間島의 韓民 保護를 日本에 의뢰하는 형식을 거쳐서 日本은 1907년 8월에 間島 龍井에 統監府의 出張所를 설치하고 韓民의 生命財產과 福利增進을 위한다는 美名 아래 日本의 間島侵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日本은 滿洲에 대한 침략정책에는 여러가지 懸案이 있었다. 鐵道敷設 鑛山採掘 間島歸屬 등에 관한 이른바 東三省 6案이라고 하는 것인데, 1909년 2월에서 3월에 걸친 駐清 日本公使와 淸 官邊과의 회담에서 매우 증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日本은 다른 利權을 획득하기 위하여 間島의 韓國 領有權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해 9월에 圖們江 韓中界務條款(間島協約) 7個條를 체결하였는데, 그 첫째가 豆滿江 石乙水로 국경을 정한다 하고, 그밖에 龍井 등을 商埠地로 개방하고 日本領事館을 설치하는 문제, 韓民의 淸의 法權에 대한 복종, 韓民의 土地所有權 인정, 吉會鐵道의 부설권 등에 관한 조항 등이다. 이와 같이 오래 계속된 間島의 歸屬問題는 日本의 奸計로 一朝에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舊韓國이 合邦이라는 名目으로 멸망당하기 전 1년이 못되는 시기의 일이다.

한편 앞에 든 李峰著 韓俊光 校注의 <延邊略史>는 史料의 이용이나 考證에 있어서 <申著>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며, 그 所論은 一方的으로 淸側에 有利하게 서술하고 있다.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은 史料를 이용할 수 있다면 朝鮮에 유리한 자료가 索出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 3. 韓人의 移住와 民族運動 및 文化活動

延邊 韓人의 활동은 移住와 定着, 생활활동 특히 開墾과 水田耕作, 그 밖의 農林畜產業 등의 활동도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 상세히 언급할 수는 없고, 다만 註1에서 열거한 文獻 중에서 이와 관련이 깊은 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韓國人の 저술로는 柳光烈〈間島小史〉가 1930年代初 까지의 가장 일반적인 개설서라고 할 수 있고, 日人の 저술로는 牛丸著〈最近間島事情〉이 間島의 前史도 언급하여 1920년대 후기까지의 상당히 상세한 저술이다. 이 後書는 日人の 著作이기는 하나 間島의 名稱, 定界, 歸屬問題, 韓民의 移住의 原因과 역사, 現狀, 러시아와 中國의 對移民政策, 그리고 間島의 資源, 稻作, 일본의 大陸 진출의 經路로서의 간도에 관한 문제들을 統計와 地圖 그리고 插畫 등을 첨가하여 서술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일본 官邊의 著述로 이와 유사한 것이 수종 있으나 대부분 그보다 간략하다. 基本文書라고 할 수 있는 자료, 즉 〈間島案〉이나 〈在滿鮮人〉 등은 근본적 정치관계의 문헌이기는 하나, 이주와 生活史에 관한 언급도 많다.

移住史를 생략한다고 하여도 間島의 移住民의 人口數에 관한 언급은 하여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分期하여 그 數를 제시하려고 한다

- |           |             |            |                 |     |               |
|-----------|-------------|------------|-----------------|-----|---------------|
| 1) 年代     | 韓人數         | 中國人數       | 〈牛丸著〉 p.121에 의함 |     |               |
| 1907      | 71,000      | 23,500     |                 |     |               |
| 1908      | 89,000      | 27,800     |                 |     |               |
| 1909      | 98,500      | 31,900     |                 |     |               |
| 1910      | 109,500     | 33,500     |                 |     |               |
| 1911      | 126,000     | 35,200     |                 |     |               |
| 2) 1924   | 279,437     | 51,824     | 〈同書〉 p.150      |     |               |
| 1925      | 348,713     | 37,420(減少) |                 |     |               |
| 年代        | 韓人          | 中國人        | 日人              | 外國人 | 〈延邊歷史〉2,p.178 |
| 3) 1927   | 368,827     | 94,960     | 1963            | 96  |               |
| 4) 朝鮮族人口數 | 〈族研論〉2, p.7 |            |                 |     |               |

年代	東北(滿洲)總數	延邊	東邊道
1936	854,411	474,333	25,328

1944	1,658,572	631,733	171,379
1949	1,110,657	529,000	129,135
5) 延邊總人口 및 朝鮮族人口 <同上書>2, p.7			
1943	總人口 866,061	朝鮮族	635,643
1949	同 835,278	同	529,000
6) 中國朝鮮族總人口 <民族知識手冊>(1988) p.830			
1964	134萬餘		
1982	176萬餘(延邊 754,500—<朝鮮族簡史> p.1에서 補充)		

上記한 바로서 移住의 大勢, 延邊에서 종래 韓人이 차지하는 人口比例, 8.15 이후의 人口數를 알 수 있다.

다음에 延邊에서의 韓人들의 獨立運動, 즉 민족운동에 관하여는 종래로 많은 저술들이 있고 특히 近來에 그 연구가 활발하여 많은 成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註1에서 든 尹炳奭·朴환 등의 저술은 이에 대한 專門의 研究의 一部로서 注目할 업적들이다. 따라서 間島에 있어서의 獨立運動 또는 民族運動에 관하여 本稿에서 그것을 詳論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中國 특히 延邊의 朝鮮族은 近來에 그들 自身, 즉 延邊의 朝鮮族의 歷史에 관하여 여러 권의 冊과 많은 論文을 발표하고 있으나, 民族運動에 관하여는 意圖의으로 이를 輕視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그들의 著述을 통하여 具體的으로 檢討하여 보려고 한다.

첫째로 <朝鮮族簡史>(延邊人民出版社刊, 1986)가 있으며 그 韓國語版은 <조선족략사>다. 原文은 全文 256面, 번역은 370면으로서 1956년에 中共의 中央黨과 毛澤東의 指示로 各界의 권위 60여명이 調查사업에 착수하여 修正 토론을 거쳐서 30년만에 출판된 책이다. 이 책의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 節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本書의 企劃부터 明白하게 共產主義運動에 焦點을 두고 있는 까닭으로 民族運動에 관한 言及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겨우 李東輝에 관한 敘述

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가 共產主義로 轉向하였기 때문이다.

共產主義운동, 따라서 反帝國主義, 反封建主義운동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한편 少數民族으로서의 朝鮮族의 漢族과의 友好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으로 小作人의 反帝 反封建 抗爭은 大書하면서 韓國人 小作人과 中國人地主와의 마찰, 일반적으로 韓民과 中國人의 反目 등은 度外視하고 있다. 일반 韓人 특히 民族主義者에 대한 中國 官憲의 壓制 등에 관한 言及도 전혀 없다.

이 책은 全 7章의 마지막 章에서 '朝鮮族의 文化'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여기서 不得已 民族運動者들의 文化運動에 관련하여 若干의 言及이 있을 뿐이다.

延邊은 그곳의 民族運動의 現場이었기 때문에 獨立運動에 관한 日帝와 中國 官邊의 記錄 文書도 殘存하고 있으며, 또 個人의 記錄이나 聞見의 採訪도 可能的 地理的 長點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基本的 立場의 差異로 그 貴重한 資料를 發掘하고 保存 整理할 企圖는 없고, 오히려 그 자료들이 損失 파괴되었을 우려가 많으며, 이것은 우리의 민족운동사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는 <中國朝鮮族人物志>(韓俊光主編, 延邊人民出版社, 1990)를 살펴 보겠다. 그 '前言'에 '長久한 反帝·反封建 투쟁중에 漢族과 그밖의 兄弟 민족과 더불어 中國革命을 위하여 重要한 공헌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內容은 延邊에서 나온 朝鮮族의 著書 論文 등에서 자주 보는 표현이다. 이 글에 이어서 '北伐戰爭·南昌起義·廣州起義·井崗山 투쟁·2.5長征·抗日戰爭·解放戰爭' 등에 決死 투쟁한 조선족 중의 우수한 代表人物의 傳記를 수록하였다고 하였다. 이책의 '編後記'에서도 '中共延邊州委·州人民政府의 直接 領導下'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 性格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36名의 傳記가 수록되어 있는데, 共產主義者가 아닌 人物

로는 申경(申圭植, 1879-1922)·申采浩(1880-1936)·金躍淵(1868-1942)의 전기가 있을 뿐인데 그들도 다 中國에서 作故한 人物들이다. 그밖의 大部分은 革命戰爭에서 30代 前後에 死亡한 사람들이며 例外로 醫師(盧基舜) 俳優(金焰) 등이 있는데 그들도 물론 共產主義者다. 申圭植의 詩를 중심으로 쓴 傳記는 <朝鮮族研究論叢 2> (1989)에도 金東勳의 執筆로 紹介되어 있다.

특이한 것으로 3.1 운동의 意義를 높이 평가한 글이 있다. 즉, 李正夫 '三一獨立運動及其偉大意義'(中國朝鮮史研究會 編, <朝鮮歷史研究論叢> 1, 1987)가 있는데 운동의 준비 勃發 발전 및 결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 序言에서 이 글을 쓰는 까닭이 韓國이 軍事獨裁政權의 統治하에 있다고 하여 그 現實과 관련시키며, 結論 부분에서 3.1운동의 국제적 영향을 논하면서 周恩來의 3.1운동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고, 끝으로 民族解放을 위하여 반드시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牽強附會한 語句를 첨가하고 있다.

小冊이지만 民族學者 黃有福의 <中國朝鮮民族研究>(遼寧民族出版社, 1989)가 있다. <朝鮮館譯語>와 訓民正音에 관한 2편 외에 10여편은 朝鮮族의 族稱, 宗教, 建築, 服飾, 舞蹈 등에 관한 小論이기는 하나, 앞에서 언급한 著述에서 보는 바와 같은 共產主義의 偏向이 露出되어 있지 않다. 생각컨대 延邊에서의 朝鮮族들의 歷史關係 著述은 共產主義 理念이 심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漢族들의 일반적 歷史 著述 보다 심하다고 느껴진다.

延邊 韓人들의 역사상의 문화활동에 관하여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朝鮮族簡史>에서 그 第7章을 4節로 나누어 朝鮮族의 教育, 文學藝術, 宗教信仰, 그리고 風俗習慣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그 第1節과 3節에 民族主義 운동과 관련된 서술이 있다.

<中國少數民族文庫>에는 朝鮮族에 관한 것이 2冊 있다. 朴奎燦 등

〈延邊朝鮮族教育史稿〉(吉林教育出版社, 1989)와 金東勳 등 〈朝鮮族文化〉(同社, 1990)가 있다. 前書의 6章 중 처음 2章은 8.15 이전, 뒤의 4章은 그 이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앞의 2章에서 理念的 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은 延邊 出版의 詩書의 경우와 같다. 後書에서는 朝鮮族文化의 역사적 고찰은 극히 간략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이 8.15 이전 間島에 있어서의 韓人의 民族主義 운동과 文化活動에 대하여 최근의 延邊에서의 著述은 극히 疏略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것도 이념적으로 歪曲된 경향이 많다.

#### 4. 韓人의 共產主義 運動과 延邊自治州의 성립

前節에서와 마찬가지로 本節에서도 間島에 있어서의 韓人들의 共產主義의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延邊에 있는 朝鮮族을 중심으로 그들이 과거의 共產主義 운동들 어떠한 입장에서 보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朝鮮族簡史〉는 7章으로 나누고 章 節 項으로 細分하였는데 章名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朝鮮族人民開發東北邊疆和初期反封建鬭爭
- 2) 朝鮮族人民反對日本帝國主義侵入延邊的鬭爭
- 3) 朝鮮族人民在中國共產黨領導下, 欣起反帝反封建鬭爭的新高潮
- 4) 東北淪爲日本帝國主義殖民地, 朝鮮族人民欣起抗日武裝鬭爭
- 5) 朝鮮族人民配給全國抗戰, 奪取抗日鬭爭的 最後勝利
- 6) 朝鮮族人民同各族人民一道爲解放全中國而奮鬥
- 7) 朝鮮族的文化

앞에서 말한 第7章을 제외하면 조선족의 역사는 '인민'의 '反封建 反帝國主義' '궤기 투쟁 전쟁'의 역사로 꾸며진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서술로 시종 일관하고 있다. 間島의 韓人의 역사가 어떻게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또한 앞에서 말한 〈中國朝鮮族人物傳〉도 같은 경향이며 이에 대하여 再論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黃龍國 主編 〈朝鮮族革命鬪爭史〉(遼寧民族出版社, 1888)은 1900년경에 시작한 日本의 침략에서 이른바 解放戰爭 까지의 약 半世紀 미만을 641面(朝鮮文版)에 걸쳐서 서술한 것인데 그 目次나 內容을 소개할 필요도 없이 '조선족의 혁명투쟁'의 역사를 더욱 상세하게 꾸며서 엮은 책이다.

延邊歷史研究所에서 편찬하는 〈延邊歷史研究〉(1986 제1집 刊行, 不定期라고 생각됨)와 延邊大學民族研究所編 〈朝鮮族研究論叢〉(1989년 이후)에 間島의 歷史에 관한 논문이 많이 실리는데, 그 論文의 대부분도 앞에서 말한 경향의 것이 많다. 中國朝鮮史研究會 編 〈朝鮮歷史研究論叢〉(延邊大出版社, 1987년 이후)에는 間島史가 아니고 朝鮮史에 관한 논문을 실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中國 또는 延邊에 있어서의 韓人들의 共產主義 운동에 관하여는 주로 延邊의 朝鮮族에 의하여 몇권의 專著와 論文들이 나와 있으나, 이것으로 그 客觀的 敘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史料의 정리와 서술은 今後의 課題로 남아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다음 결론에서 再論하려고 한다.

다음에 延邊朝鮮族自治州의 성립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려고 한다. 처음에 1952년 9월에 自治區가 건립되었는데 1955년 自治州로 改稱되었다. 8.15 이후 自治州가 성립되기까지의 行政上의 經緯를 日字順으로 略記하면 다음과 같다.(延邊人民出版社刊, 編寫組 編, 〈延邊朝鮮族自治州概況〉朝鮮文, 1984, pp.77-80 의함)

1945. 8. 15. 쏘련 紅軍과 東北抗日連軍 分遣隊 延吉 進駐
8. 20. 間島臨時政府 구성
10. 20. 中共延邊委員會 성립
11. 中. 中共延邊地方委員會로 개편, 간도임시정부 해체
11. 20. 延吉 春 和龍 汪清 安圖 5개 縣 관할

1946. 1. 吉東分省委員會를 두고 延邊地委 취소, 8개 縣 관할  
 1948. 3. 延邊專區를 두고, 5개 縣 관할  
 1950. 10. 1. 延吉縣 所在地를 延吉市에서 龍井市로 이전  
 1952. 9. 3. 延吉朝鮮民族自治區人民政府 성립, 5개 縣 관할  
 1955. 12. 8. 自治區를 自治州로 改稱  
 1958. 9. 全州에 78개 農村人民公社 성립  
 1965. 5. 圖們市를 州 직할시로 함  
 1968. 8. 延吉 圖們 2市와 延吉 春和龍 汪清 安圖 敦化 6縣 관할  
 (후에 龍井도 鎮에서 市로 昇格)

〈延邊朝鮮族自治州概況〉은 최근의 延邊의 自然, 沿革, 사회적 變革, 自治, 經濟, 文化와 教育, 言語 文字, 宗教, 風習, 名勝古蹟에 관한 종합적인 개설서이며, 그밖에 현재의 경제산업 등에 관한 책도 출판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몇가지 점을 지적하여 두려고 한다.

첫째로 史料에 관한 문제다. 今世紀初 까지의 基本史料로서 舊韓國時代의 〈間島案〉은 정리 출판되었다. 그러나 日本의 機密文書나 中國側의 記錄은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또 〈間島案〉 이전의 우리나라의 史料도 散發의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조직적인 정리는 되어 있지 않다.

今世紀 初에서 8.15에 이르기 까지의 史料는 部分的으로 民族運動史를 연구하는 學者들에 의하여 발굴되고 있으나 역시 조직적인 정리는 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일본측의 秘密文書 특히 間島의 現地 日本機關에 있던 문서는 현재 殘存하고 있다고 傳聞하고 있으나 거의 이용이 안되고 있다. 중국측 文獻도 마찬가지 상태다. 民間人 소유의 기록도 중요한 것인데 때로는 새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한다. 8.15 이후의 資料는 혼란기가 상당히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保存이 잘 되어 있는지 문제다.

이와 같은 資料의 정리와 발굴에 관한 문제와 아울러 자료에 대한 태도 즉 政治的 理念에 관한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앞의 제4절과 제5

절에서 거듭 말한 바와 같이 延邊의 朝鮮族 學者는 共產主義의 偏向에서 獨立運動 내지는 民族主義運動을 거의 度外視하고 있다. 따라서 現地の 日本機關이나 民間에서 보유하고 있던 民族運動 관계의 자료들은 廢棄되고 散逸되었을 우려가 많다. '우리는 그런 자료-民族運動 關係-에는 관심이 없다'고 延邊의 어느 中堅學者가 말하였다는 사실도 傳聞하고 있다.

共產主義的 偏向이 심한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1) 間島에는 일찌기 左傾思想이 導入되고 간도의 정세가 그 溫床이 될 수 있었다. 2) 이른바 中共의 解放戰爭이 東北에서 오래 계속되고 朝鮮族으로서 犧牲된 자가 많았다. 3) 朝鮮族은 少數民族으로서 中共의 強要와 監視가 더욱 심하였을 것이다. 4) 間島는 中國 本土의 邊境이며 또 北韓과 隣接하고 있어서 그 可能性이 더욱 많다. 사실 현재 다른 지역보다 延邊에서 黨이나 政府가 公知시키는 標語, 즉 壁書 등이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이와 같은 사상적 기초의 문제와 아울러 歷史 연구의 方法에 관한 문제도 있다. 앞에서 말한 <朝鮮族簡史>나 <革命鬪爭史>의 서술에는 그 典據의 제시가 극히 적다. 事實임을 立證하는 첫걸음이 典據의 明示다. 전거가 없이는 信憑性이 없다.

더욱이나 8.15 전의 間島의 狀況은 매우 혼란하였다. 官兵인지 民兵인지 私兵인지, 또는 共匪인지 匪賊, 馬賊인지 正體를 알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면, 滿洲事變 후에 日軍의 延吉 주둔 守備隊長이었던 日野大尉인가 하는 인물은 전에 馬賊으로 假裝하고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簡史나 革命史의 彼我的 구분은 지나치게 分明하다고 할 수 있다.

延邊의 朝鮮族의 서술에서 사라진 民族運動史를 부활시키는 한편, 올바른 共產主義 運動史를 다시 쓰기 위하여서는 偏向된 理念을 떠나서 史料를 정리하고 歷史를 서술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 Ⅲ. 延邊 朝鮮族自治州의 民族區域自治

延邊의 朝鮮族은 自治州라는 특수한 行政區域 안에서 民族區域自治를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延邊朝鮮族自治州의 설치와 운영과정 및 그것에 의한 民族區域自治의 실행을 살펴보는 것도 延邊의 朝鮮族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延邊朝鮮族自治州에서 民族區域自治가 실행된 과정에 관한 기왕의 연구로는 延邊大學 民族研究所가 편집한 <朝鮮族研究論叢二>(延邊人民出版社, 1989, 延吉)와 Dae-Sook Suh와 Edward J. Shultz가 편집한 <Koreans in China>(Center for Korean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Hawaii, 1990, Honolulu) 등에 수록된 수편의 논문이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中國의 朝鮮族學者들로 구성된 기존 연구진은 아직 黨과 政府의 意志를 벗어나는 연구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民族問題는 현대 中國이 안고있는 가장 주요한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中國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主題가 되고있다. 그러나 최근 中國에서 量產되고 있는 연구성과들, 예컨대 中央民族學院의 民族研究論叢인 <民族理論和民族政策論文選 1951-1983>(中央民族出版社, 1986, 北京)을 보면 대부분 中國共產黨의 民族政策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中國의 민족정책을 이해하려면 차라리 張爾駒 主編의 <中國民族區域自治的理論和實踐>(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北京)이나 劉鐔 何潤 등이 저술한 <民族理論和民族政策綱要>(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0, 北京)와 같은 說明書나 <中國大百科全書 民族篇>(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6, 北京)과 같은 事典類가 더 유용하다. 國內에서는 姜命相 著 <中共의 少數民族政策>(陸盛出版, 1988, 서울)과 趙政男 著 <中國의 民族問題>(教養社, 1988, 서울) 등이 나와 中國의 민족정책과 민족문제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양자 모두 創意的이고 傳門的인 연구내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기존연구 가운데서 발견되는 신빙성 높은 자료들을 이용함과 동시에, 民族自治法과 같은 基本史料들을 주요 이용할 것이다. 民族自治관계 諸法規에 관한 자료로서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法制工作委員會 編 <中華人民共和國法律匯編>(人民出版社, 1985, 北京) 과 史筠 著 <民族法律法規概述>(民族出版社, 1988, 北京)이 주로 이용될 것이며, 延邊에 관한 기초자료로서는 中國科學院 民族研究所 吉林少數民族社會歷史調查組가 편찬한 <朝鮮族簡志>와 <朝鮮族簡史>(1964, 長春) 및 연변경제과학 기술사회발전연구분집 <발전도상의 연변 -상하->(延邊人民出版社, 1990, 延吉) 등이 참조될 것이다.

### 1. 延邊朝鮮族自治州의 建立

현재 中國에서 실시된 주요한 政策이 中國共產黨의 그것과 일치하듯이, 民族區域自治 역시 中華人民共和國이 건국되기 전부터 中國共產黨에 의해 준비되었다. 예컨대 延邊의 朝鮮族 聚居地域에 自治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建國 이후였지만, 中國共產黨에 의해 自治가 약속된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였다. 물론 約束의 배경에는 反帝 抗日 統一戰線의 형성이라는 戰略的 필요성이 개재되어 있었다.

1927년 이후 中共 滿洲省委員會가 성립된 이후, 反日鬪爭이 선두에 위치한 60여만 朝鮮族問題가 黨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1930년에는 黨中央의 지시로 滿洲省委가 朝鮮族聚居區에 간부를 파견하여 朝鮮族의 실제문제를 조사하고 小數民族運動委員會의 명의로 '在滿韓國勞動群衆運動決議草案'을 발표했다. 이 決議案은 조선족을 中國의 少數民族으로 간주하고 '인구다수의 中國 勞農大衆과 共同提携하여 大地主 大資產階級の 反動政治를 몰아내고 자신을 解放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1934년에 소집된 中華소비에트 第一次 全局代表大會에 수명의 朝鮮族 대표를 참가시키고, 楊林을 中央執行委員會委員으로 선출함으로써, 조선족을 이른바 '中華民族大家庭'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1936년에 長白山 지구에

서 성립된 祖國光復會는 그 十對綱領의 하나로서 ‘東北 朝鮮族人民이 日帝에 승리한 뒤 自願의 원칙하에 民族自治를 실시한다’고 약속했으며, 같은 해에 열린 南滿黨 第二次代表大會에서는 抗日鬪爭에서 승리한 뒤 ‘三千萬 東北人民의 人民政府를 건립’할 뿐만 아니라 ‘東北朝鮮族의 自治區’를 건립할 것을 결의했다.<sup>14)</sup> 中國共產黨은 三年解放戰爭중에 民族平等政策을 실시하여 延邊의 각급 人民政府 幹部 가운데 多數를 朝鮮族에서 선발하고,<sup>15)</sup> 1949년에는 延邊大學을 설립하여 民族教育을 실시하고 民族幹部를 양성하였다.

1949년 10월에 개최된 全國 第一屆政治協商會議에 朱德海가 11개 民族의 198委員중 1인으로 120萬 朝鮮族을 대표하여 共同綱領을 통과시키고 民族區域自治의 實施 宣言에 참여하였다.<sup>16)</sup> 韓國戰爭중인 1952년 2월 22일에 State Council에서 民族區域自治의 실행을 위한 일반계획이 초안되었고, 同年 8월 8일에는 中央人民會議에서 批准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延邊의 5개縣과 1개 市에서 뽑힌 300명의 대표로 구성된 제1차 人民代表大會에서 朱德海를 人民政府 主席으로 선출했다. 副議長의 한명은 漢族이고 한명은 朝鮮族이었다. 朱는 日帝의 항복을 받은지 7주년이 되는 1952년 9월 3일을 기해 延邊朝鮮族自治區의 설립을 선언하였다.<sup>17)</sup>

1952년에 설립된 延邊朝鮮族自治區는 中華人民共和國이 인정한 첫번째 自治單位의 하나였으며, 그 法的 行政의 지위는 內蒙古自治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省과 同級이었다. 그러나 1954년 9월에 全國人民會議에서

- 
- 14) 朴昌昱, ‘中國朝鮮族의 歷史和 民族區域自治의 實施’(延邊大學民族研究所 編 <朝鮮族研究論叢>2, 1989) pp.22-24.
- 15) 1948년 統計에 의하면, 延邊 各縣區級 人民政府의 주요 幹部 221명 가운데서 朝鮮族이 59.3%를 점하고, 783명의 區級 幹部 가운데서 83.9%가 朝鮮族이었으며, 1,463명의 村級 간부 중 79%가 조선족이었다.(上揭論文, p.25)
- 16) 崔龍浩, ‘中日朝鮮族의 地位與發展’(朝鮮族研究論叢 2, 1989) p.29
- 17) Chae-Jin Le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Koreans in China(<Koreans in China> ed by Dae-Sook Suh & Edward J. Shultz) p.98

채택된 憲法 제53조에 따라, 延邊 人民議會는 1955년 12월에 延邊朝鮮族自治區를 吉林省에 예속되는 행정단위인 自治州로 바꾸도록 결의하였다. 省과 自治區는 法的으로 동등하고 吉林省은 自治區를 갖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降等이 延邊의 自治能力的 본질을 바꾸지는 않았으나, 그 법적 지위가 內蒙古自治區 등과 다르게 하였다. 그 대신 中國政府는 1958년에 敦化縣을 延邊自治州에 편입시켜 延邊의 영역을 확대하고 그 資源基盤을 강화하도록 결정하였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1958년에 吉林省 鴨綠江邊에, 전체인구 34,100명의 69%가 漢族이고 30%만이 朝鮮族임에도 불구하고, 長白朝鮮族自治縣을 설립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전 중국에 42개의 朝鮮族自治村(黑龍江省에 29개, 吉林省에 7개, 遼寧省과 內蒙古에 각각 3개씩)이 1958년에 건립되었다. 吉林省에는 朝鮮族-滿州族 聯合自治州도 건립되었다.<sup>18)</sup>

이와 같이 延邊의 朝鮮族은 中華人民共和國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自治的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건국이 된 뒤에는 蒙古族과 같이 중요한 少數民族과 함께 처음으로 自治區를 세울 수 있었다. 행정단위의 재조정으로 인해 延邊自治區가 自治州로 강등되기는 했지만, 自治縣 自治村 등이 다수 건립되어 朝鮮族의 區域自治가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自治州 自治縣 등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民族區域自治가 各實相符하게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민족구역자치의 핵심은 自治權의 실행에 있는 만큼, 延邊朝鮮族自治州가 憲法과 自治法에 규정된 自治權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즉, 中國憲法과 法律에 규정된 民族區域自治의 原則과 精神을 살펴봄과 동시에 延邊朝鮮族自治州에서 民族區域自治가 實行되는 실제과정을 확인함으로써, 原則과 實際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18) Chae-Jin Lee의 上揭論文, pp.99-100

## 2. 民族區域自治의 原則과 精神

中華人民共和國의 憲法은 '統一的 多民族國家'를 유지하고 '平等 團結 互助의 社會主義의 民族關係'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民族區域自治를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면 민족구역자치란 무엇인가? 1984년의 第6屆 全國人民代表大會 第2次 會議에서 제정된 民族區域自治法(이하 <自治法>)이라 略稱함)의 序言에서는 민족구역자치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民族區域自治란 國家의 統一된 領導하에 각 少數民族이 聚居하는 地方이 區域自治를 實行하여, 自治機關을 設立하고, 自治權을 行使하는 것이다.'

이러한 定義에 의하면, 現代 中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民族區域自治의 가장 核心的인 내용은 自治機關의 設치와 自治權의 행사에 있다. 自治機關의 設置와 自治權의 行使 그 자체가 民族自治의 實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兩者에 관한 <自治法>의 규정들을 살펴 少數民族에 주어진 自治의 量과 質을 측정하고자 한다.

### (1) 自治機關의 設置

먼저 自治機關의 設置目的을 살펴보면, 自治機關에 기대되는 독특한 機能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自治法>은 總則에서 자치기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기대하고 있다.

<제3조>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은 國家의 一級地方政權機關이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民主集中制의 원칙을 실행한다.'

<제4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地方國家機關의 職權을 행사함과 동시에... 自治權을 행사하며, 본 지방의 실제 情狀에 근거하여 國家의 法律과 政策을 貫徹 執行한다.'

<제5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반드시 國家의 統一을 수호하고, 憲法과 法律이 본 지방에서 遵守 執行됨을 保證해야 한다.'

〈제6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各族 人民이 力量을 集中하여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을 進行하도록 領導한다… 본 지방의 情況에 근거하여 憲法과 法律에 違背되지 않는다는 原則하에서 특수한 政策과 융통성 있는 措置를 採取하여 민족자치지방의 경제 문화적 建設사업의 발전을 加速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國家計劃의 指導하에 實際에서 출발하여 부단히 勞動生産率과 經濟效益을 提高하고 社會生産力을 발전시키며 점차 各 民族 人民의 物質生活의 水準을 향상시킨다… 民族文化의 우수한 傳統을 繼承 發揚하고 民族의 特性을 가진 社會主義 精神文明을 建設하며 各 民族 人民의 社會主義 覺悟와 科學文化 水準을 부단히 제고시킨다.’

〈제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일체의 國家利益을 首位에 두고 上級 國家機關이 부여한 各種의 任務를 積極 完遂해야 한다.’

〈제9조〉 ‘上級 國家機關 및 民族區域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各 民族의 平等 團結 互助의 社會主義 民族機關을 守護 發展시킨다…’

〈제1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各 民族이 모두 자기의 言語와 文字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自由를 갖고 자기의 風俗과 習慣을 保持 혹은 改革할 自由를 갖도록 保障한다.’

〈제1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各 民族 公民이 宗教와 信仰의 自由를 갖도록 保障한다…’

이와 같이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平等 團結 互助의 社會主義 民族關係를 守護 發展시키고, 各 民族이 자기의 言語 文字를 使用 發展시킬 自由, 자기의 風俗 習慣을 保持 改革할 自由, 宗教信仰의 自由 등을 保障하기 위해 設立되었다. 이와 동시에 自治機關은 國家의 地方政權機關으로서 國家의 統一을 維持 守護하기 위해 設置되었다. 즉,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統一의 多民族國家’인 中華人民共和國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手段이다. 自治機關의 이러한 存在意味는 이미 憲法에서 밝혀져 있지만, 憲法의 子法인 〈自治法〉은 自治機關의 또다른 設立目的

을 제시하고 있다. <제6조>에서 규정하는 自治機關의 새로운 역할이 그것이다. 특히 自治地方의 특수한 實際 情況에 따라 國家의 政策을 融通性있게 實施하고 民族 고유의 특성을 가진 社會主義의 精神文名을 건설한다는 自治機關의 새로운 역할은 각 민족 인민의 力量을 集中하여 社會主義 現代化(四化)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前提條件으로 강조되고 있다. 요컨대 민족자치지방의 自治機關은 '自由 平等한 民族 大家庭'을 이루는데 필요한 제도적 裝置일 뿐만 아니라, 國家의 統一을 維持하고 社會主義 現代化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手段이기 때문에 設置되었다고 하겠다.

민족자치지방 自治機關의 設置 基準과 方法에 대해서는 <自治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少數民族이 聚居하는 地方은 當地의 民族關係와 經濟發展 등의 조건에 근거하고 歷史的 情況을 참작하여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少數民族 聚居區를 基礎로 하는 自治地方을 建立할 수 있다. 민족자치지방 內의 其他 少數民族 聚居地方은 相應하는 自治地方 혹은 民族鄉을 建立한다. 民族自治地方은 본 지방의 實地 情況에 의거하여 一部分의 漢族 혹은 其他 民族의 居民區와 城鎮을 包括할 수 있다.'

<제13조> '민족자치지방의 名稱은 특수한 情況을 제외하고서는 地方名稱, 民族名稱, 行政地位의 順序에 따라 組成한다.'

<제14조> '民族自治地方의 建立, 區域境界의 分割, 名稱의 組成 등은 上級 國家機關이 有關地方의 國家機關과 會同하여 有關民族의 代表와 충분히 協商한 뒤에 決定하며, 法律에 규정한 節次에 따라 國務院에 報告하여 批准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自治地方의 建立과 自治機關의 設置는 民族關係 經濟發展 歷史的 背景 등을 고려하고 有關民族과 충분히 協議하여 實行하게 된다. 그러나 自治地方을 建立하고 區域境界을 分割하거나 名稱을 짓는 主體는 해당民族이 아니고 上級 國家機關과 國務院이다. 특히 自治地方 設立의

根據를 ‘參酌’하거나 有關民族의 代表와 충분히 ‘協商’하여 결정한다는 등의 과정이 매우 非制度的의이어서, 自治機關의 設置과정에서 해당 民族의 意志가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이 주목된다.

民族自治地方 自治機關의 組織과 構成에 대한 <自治法>의 규정도 二重的 志向性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제15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自治區 自治州 自治縣의 人民代表大會와 人民政府이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정부는 本級의 인민대표대회와 上一級 國家行政機關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工作을 보고하며… 각 민족 자치지방의 인민정부는 모두 國務院의 統一的 領導하의 國家行政機關으로서, 모두 國務院에 服從한다. 민족자치지방 자치기관의 組織과 工作은 憲法과 法律에 근거하여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條例 혹은 單行條例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는 區域自治를 실행하는 민족의 대표 외에, 본 行政區域내에 居住하는 기타 민족도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 있어서, 區域自治를 실행하는 민족과 기타 少數民族 代表의 定員과 比率는 法律이 규정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省 自治區의 인민대표대회 常務委員會가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는 區域自治를 실행하는 민족의 公民이 主任 혹은 副主任을 담임하여야 한다.’

<제17조> ‘自治區 主席, 自治州 州長, 自治縣 縣長은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公民이 담임한다. 自治區 自治州 自治縣 인민정부의 기타 構成人員은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과 기타 少數民族의 人員을 최대한 配置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自治機關의 組織과 業務가 自治機關 자체에 의해 제정된 自治條例와 單行條例에 의해 규정되고 自治機關의 最高位職 등이 區域自治를 실행하는 민족의 成員에 의해 담임되는 것은 民族區域自治의 實効性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前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各급 自治機關이 上급 國家機關이나 國務院의 領導에 服從하도록 규정하고 自治地方의 人民代表大會에 區域自治를 실행하는 민족 이외의 其他 民族에게도 일정한 代表 定員을 할당하도록 규정한 것은 民族區域自治의 實効性을 오히려 弱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人民代表大會를 漢族이 사실상 支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역자치 실행하는 민족의 公民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 主任 '혹은' 副主任을 擔임하도록 한 규정 역시, 漢族이 主任을 擔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陷穽의 하나로 지적될 수도 있다.

## (2) 自治機關의 自治權

민족자치지방의 人民代表大會와 人民政府는 國家의 一級 地方政權機關임과 동시에 自治機關이기 때문에, 同級의 地方 國家機關이 갖는 職權을 행사함과 동시에 自治權을 행사한다. 民族區域自治의 核心은 바로 이 自治權에 있다. 따라서 현대 中國의 少數民族 政策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自治機關에 부여된 自治權의 質과 幅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前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2憲法>에서는 自治機關이 행사할 自治權의 내용으로, 自治條例와 單行條例의 制定權, 財政收入의 自主的 按配使用權, 地方性 經濟建設事業의 自主的 按配 管理權, 教育 科學 文化 衛生 體育사업의 自主的 管理權, 公安部隊의 組織權, 現地 言語 文字의 使用權, 民族幹部 專門人 技術者의 自主的 養成 配置權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自治權의 核心을 구성하는 要素임은 물론이지만, <自治法>에는 이들 權限 못지않게 중요한 權限이 규정되어 있다. 上級機關의 決定이나 命令을 따르지 않거나 現地의 특수한 實情에 맞추어 融通性있게 실시할 수 있는 權限이 그것이다.

<제20조> '上級 國家機關의 決議 決定 命令 및 指示가 民族自治地方의 實際情況에 適合하지 않을 때는, 自治機關이 上級 國家機關의 批准을 거쳐 執行을 變通하거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自治法〉에는 憲法에 明示된 自治權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自治法〉은 經濟建設事業의 自主的 按配管理權에 대하여,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國家計劃의 指導하에 地方性 經濟建設事業을 自主的으로 按配하고 管理’〈제25조〉 하며, ‘本 地方의 特性과 需要에 근거하여 經濟建設의 方針과 政策 및 計劃을 制定’〈제26조〉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社會主義 原則을 堅持한다는 前提하에, 法律의 규정과 本 지방의 경제발전의 特性에 근거하여, 生産關係를 합리적으로 調整하고 經濟管理體制를 改革할 수 있는 權限. 예컨대, 本 地方내의 草場과 森林의 所有權과 使用權을 確定할 수 있는 權限.〈제27조〉

둘째, 法律의 규정에 따라, 國家의 統一的 計劃에 따라, 本 지방의 自然資源을 優先的 合理的으로 管理 保護 開發 利用할 수 있는 權限. 예컨대, 草原과 森林을 保護 建設하고 樹草의 植種을 組織 獎勵하며, 그 어느 組織이나 個人이 어떠한 手段을 이용하여 草原과 森林을 破壞함을 禁止할 수 있는 權限.〈제28조〉

셋째, 國家計劃의 指導하에 本 지방의 財力 物力 및 기타 구체적인 條件에 근거하여, 地方의 基本建設 項目을 自主的으로 按配하는 權限.〈제29조〉

넷째, 本 地方에 隸屬된 企業 事業을 自主的으로 管理하는 權限.〈제30조〉

다섯째, 國家의 計劃收購과 上調를 完成하는 任務 이외의 工農業產品과 기타 土特產品을 按配 利用할 수 있는 權限.〈제31조〉

여섯째, 國家規定에 따라 對外經濟貿易活動을 展開하고, 國務院의 批准을 받아 對外貿易口岸을 開闢하거나 邊境貿易을 展開할 수 있는 權限. 〈제32조〉

憲法이 명시한 ‘財政收入의 自主的 按配 使用權’에 대해서도, 〈自治法〉은 ‘民族自治地方의 財政은 一級 財政이며 國家財政의 一部’라고 규정함

과 동시에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國家財政體制에 의해 民族自治地方에 歸屬되는 財政收入을 自主的으로 按配 使用할 수 있는 地方財政管理의 自治權을 갖는다'고 규정한 다음, 그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財政豫算을 執行하는 과정중에 收入의 超過分과 支出의 節(約)餘資金을 자체적으로 按配 使用할 수 있는 權限<제33조>

둘째, 본 지방의 각종 支出의 標準 定員 定額에 대하여, 國家가 규정한 원칙에 근거하고 본 지방의 實際情況과 결함하여, 補充規定과 구체적인 方法을 制定할 수 있는 權限<제34조>

셋째, 國家 稅法을 執行할 때, 國家가 統一的으로 審査 許可하여야 하는 稅收減免의 項目 이외에, 地方財政收入에 속하고 收入上 配慮와 獎勵가 필요한 일부 項目에 대해서는 減稅 혹은 免稅를 실행할 수 있는 權限.<제35조>

한편 憲法에서 규정한 '教育 文化 衛生 體育事業의 自主的 管理權'에 대해서도, <自治法>은 여러 項目을 나누어 具體的인 설명을 가하고 있다.

첫째, 國家의 教育方針에 근거하고 法律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의 教育規劃, 各級 各種 學校의 設치, 學制, 辨學形式, 教學內容, 教學用語 및 學生募集方法 등을 決定할 수 있는 權限.<제36조>

둘째, 民族教育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文盲을 掃除하고 각종 學校를 設立 運營하며 初等義務教育을 普及하고 中等教育을 발전시키며, 民族師範學校 民族中等專業學校 民族職業學校 및 民族學院을 設立 運營하여 各少數民族의 專業人材를 培養할 수 있는 權限. 예컨대, 少數民族의 牧區와 경계가 곤란하고 거주가 분산된 少數民族의 山區를 위하여, 寄宿舍와 獎學金 위주의 公立 民族小學校와 民族中學校를 設立할 수 있는 權限.<제37조>

셋째, 民族形式과 民族特性을 가진 文學, 藝術, 新聞, 出版, 放送, 映畫 TV등 民族文化事業을 自主的으로 發展시키며, 民族書籍을 收集 整理 翻

譯出版하고 民族의 名勝古蹟 珍貴文物 및 기타 중요한 歷史文化遺產을 保護할 수 있는 權限.<제38조>

넷째, 본 지방의 科學技術 發展計劃을 自主的으로 決定하고 科學技術 知識을 普及시킬 수 있는 權限.<제39조>

다섯째, 본 지방의 醫療 衛生事業의 發展計劃을 自主的으로 決定하고 現代醫藥과 民族傳統醫藥을 發展시킬 수 있는 權限.<제40조>

여섯째, 體育事業을 自主的으로 발전시키고 民族傳統의 體育活動을 전개하며 刻族 人民의 體質을 증강시킬 수 있는 權限.<제41조>

일곱째, 다른 지방이나 國外와 教育, 科學技術, 文化藝術, 衛生, 體育 등 方面의 交流와 協作을 進행할 수 있는 權限.<제42조>

여덟째,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流動人口의 管理方法을 制定할 수 있는 權限.<제43조>

아홉째, 법률규정에 근거하고 본 지방의 實際情況과 結合하여, 計劃生育을 실행할 수 있는 權限.<제44조>

열번째, 生活環境과 生態環境을 保護하고 改善하며 汚染과 기타 公害를 防治할 수 있는 權限.<제45조>

이와 같이 民族區域自治地方의 自治機關에게 부여된 自治權의 내용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어서, 民族區域自治의 實質의 效果를 제고하도록 기대될 것이다. 그러나 自治機關에 부여된 自治權이 실제로 實現되는 과정에 여러가지 制動裝置가 부착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自治機關이 制定한 自治條例와 單行條例가 실제로 效力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全國人民代表大會나 國務院과 같은 上級 國家機關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제24조), 혹은 自治地方의 經濟建設事業을 자주적으로 組織 管理하고 經濟建設의 方針 政策 計劃등을 制定하는 과정에서 ‘國家計劃의 指導’를 받아야 한다(제 25-26조)든가, ‘國家의 規定에 따라’ 對外貿易을 행하고 ‘國務院의 批准을 얻어’ 國境貿易을 進행할 수 있다(제32조)는 등의 但書 條項들이 그것이다. 現實에 있어 이러한 條件들은 自治權의 실현을 制限

혹은 沮害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에는 自治權이 부여됨과 동시에, 그와 상응하는 義務가 부여되었다. 自治機關의 自治權行使가 區域自治를 실행하는 各 少數民族이 '본 민족 內部的 事務를 스스로 管理할 수 있는 權利를 保障'(序言)하는 것이라면, 自治機關에 부여되는 義務는 區域自治를 실행하는 민족 이외의 民族의 權益을 保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自治權의 실질적 의미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自治法>이 自治機關에 부여한 義務事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地方내의 각 民族이 모두 平等的 權利를 享有하도록 保障해야 한다.<제48조>

둘째, 본 地方내의 각 民族의 公民이 모두 憲法이 규정한 公民의 權利를 享유하도록 保障한다.<제52조>

셋째, 본 地方에서 聚居하는 기타 少數民族이 相應하는 自治地方 혹은 自治鄉을 建立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제50조>

넷째, 본 地方의 각 民族이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도와야 한다.<제50조>

다섯째, 본 地方에 散居하는 民族의 特性과 需要를 配慮해야 한다.<제50조>

여섯째, 본 地方의 각 民族에 관계된 特殊問題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그들의 대표와 충분히 협상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제51조>

일곱째, 각 民族의 幹部와 群衆을 團結시켜 그들의 積極性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民族自治地方을 共同으로 建設하게 한다.<제48조>

여덟째, 각 民族의 幹部가 言語와 文字를 相互學習하도록 교육하고 장려한다.<제49조>

아홉째, 祖國 人民勞動 科學 社會主義를 사랑하는 公衆道德을 제창하고 본 地方내의 각 公民이 愛國主義 共產主義 民族政策에 관한 教育을 실시하며, 각 民族의 幹部와 群衆이 言語와 文字, 風俗과 習慣, 宗教와

信仰을 相互信任 相互學習 相互尊重하고 國家의 統一과 各民族의 團結을 共同으로 維持守護하도록 教育시켜야 한다.(제53조)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民族自治地方의 民族關係를 위해 설정되었다. 自治地方내의 각 민족이 평등한 권리와 公民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각 민족의 발전을 원조하며 각 민족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自治機關의 당연한 任務다. 그러나 이러한 任務가 사실상 自治機關의 義務로 이해되는 까닭은 條文상의 '各民族'이 實際狀況에서는 '漢族'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祖國과 社會主義를 사랑하고 共產主義와 民族政策을 이해하며 國家統一과 民族團結을 수호하도록 각 민족의 幹部와 公民을 教育시키는 임무를 自治機關에 위임한 것은 民族區域自治를 통해 國家가 기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3. 延邊 朝鮮族自治州의 民族區域自治 實行

民族自治 개념은 中國의 국가적 정치적 통일체 안으로 少數民族을 포용하고 압도적 다수인 漢族의 지배와 압박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 공포를 씻어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中國의 새로운 自治政策 하에서 少數民族은 제한된 정도의 自治의 책임을 실행하고 그들 자신의 言語 慣習 전통을 中國의 제도적 統制의 관려하에서 향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中國의 自治政策의 핵심은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는 少數民族의 自治機關을 스스로 운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있었다. 그러면 延邊朝鮮族自治州의 경우는 어떠하였는가.

제1차 延邊 人民代表大會의 300명 代表 가운데서 69.7%가 朝鮮族이고 漢族은 79명이었다. 延邊 人民政府의 13개部處 가운데서 11개部處의 長官이 朝鮮族이었으며, 전체 幹部 7,814명 가운데서 78%가 조선족이었다. 1951-52년 기간중, 延邊의 縣 鄉 村級의 代表 20,100명 가운데서 82%가 조선족이었다. 1954년 7월에 제1차 延邊 人民代表大會가 人民會議 (People's Congress)로 대체되었는데, 이 새로운 立法機關의 代表는 모두

251명으로서, 그중 162명(64.5%)이 朝鮮族이고 漢族이 79명(31.5%)이었다.<sup>19)</sup>

1984년의 延邊 權力構造에 관한 統計에 의하면, 人民代表大會의 대표 515명 가운데 55%가 朝鮮族이었고, 常務委員會 25명 가운데 18명이 조선족이었으며, 主任이 조선족, 副主任 6명중 5명이 조선족이었다. 또한 人民政府의 州長이 조선족이고, 副州長 5명중 2명이 조선족이었다. 共產黨 第1書記가 조선족, 第2書記는 漢族이었다.<sup>20)</sup> 1988년의 통계에 의하면, 延邊自治州朝鮮族 人口는 州總人口의 40.5%였으나, 朝鮮族幹部는 全州幹部總數의 50.7%였다. 人大 常務委員會 主任은 조선족이었고, 副主任 9명중 5명이 조선족이었다. 州長은 조선족이고 副州長은 6명중 3명이 조선족이었다. 人民法院長과 人民檢察院長도 모두 조선족이었고, 中共自治州委員會 書記도 조선족이었다. 長白朝鮮族自治縣의 조선족 인구는 총 인구의 17.3%였지만, 조선족 간부는 전체 간부의 23%를 점하였다.<sup>21)</sup>

延邊自治機關의 幹部 가운데서 朝鮮族이 점하는 비율이 조선족의 人口 점유비율보다 높듯이,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조선족대표의 비율도 인구비율을 상회하였다. 예컨대, 1968년에 열린 第6屆 全國人民代表大會에 朝鮮族代表는 모두 17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대표총수의 0.57%에 해당하는 수였으며, 1988년의 第7屆 全人大에는 0.675에 해당하는 20명이 조선족 대표로 참가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조선족 人口가 全國總人口에서 점하는 비율의 3배수에 이르는 것이었다.<sup>22)</sup> 1987년에 개최된 제13차 전국대회에서 中國共產黨은 175명의 中央委員會 정규멤버를 뽑았는데, 全國人口의 6.7%에 불과한 55개 少數民族이 전체 위원의 9.1%에 해당하는 16명의 대표를 뽑았으며, 그중의 2명은 朝鮮族이었다. 이 회의는

19) Chae-Jin Lee의 上揭論文, p.99

20) 上揭論文, p.104

21) 崔龍浩 前揭論文, pp.30-31

22) 上揭論文, p.29

조선족이 1명 이상의 대표를 파견한 최초의 회의였다.<sup>23)</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民族區域自治의 핵심은 自治權의 행사이고 自治權의 행사는 自治條例의 제정에서 부터 시작된다. 延邊朝鮮族自治州 역시 1985년 4월 22일 제8차 인민대표대회 제3기 회의에서 ‘自治條例’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延邊의 사회 정치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條例를 제정함으로써, 연변의 自治機關은 野生動物의 보호, 都市人口의 이동, 都市衛生의 관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sup>24)</sup>

少數民族에게 부여되는 自治權 가운데 가장 큰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이 고유한 言語 文字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民族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정치 사회적 意識을 고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延邊에서도 1952년에 自治區가 설치된 이후, 朝鮮語文이 全州에서 광범하게 사용되면서 朝鮮族에게 自治權 행사의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였다. 정부집회의 기록문서와 公布文 등에 조선어문이 사용되었고 訴訟과 警察에 관계된 업무 등에서도 조선어문이 사용되었으며,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도 자신의 언어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언어 신문과 잡지 및 각종 서적들이 대량으로 출판되었고, 연변 방송은 조선어와 중국어로 방송하였다. 조선어문의 광범한 사용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가 촉진되고 소수민족을 유지할 갖가지 활동이 고무되었다. 黨 中央委에서도 소수민족의 언어발달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민족평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민족의 언어도 공부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延邊의 漢族 幹部들도 조선어문을 익히고 조선족 간부는 중국어문을 배우게 하였다.<sup>25)</sup> 조선어문은 全國代表大會에 의해 投票用紙나 다른 記錄에 사

23) Chae-Jin Lee 前揭論文, p.93

24) Shangzhen Jin, *The Rights of Minority Nationalities in China: The Case of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Koreans in China》, 1990) p.23

25) 上揭論文, p.34

용되는 6種의 公式言語의 하나로 인정되기도 했다.<sup>26)</sup>

延邊의 朝鮮族에 부여된 自治權 가운데 특히 教育에 관한 권한은 조선족으로 하여금 55개 소수민족중 가장 높은 문화적 수준을 향유하게 하였다. 1986년의 통계에 의하면, 就學兒童의 98.5%가 民族學校 教育을 받고 92.6%가 中學校 教育을 받았다. 自治州 설립이후 35년간에 14,000명이 大學 教育을 받았고 20,000명이 技術高等學校를 졸업했다. 1만 명당 118명이 大學生이라는 延邊의 비율은 全國平均보다 2배이상 높은 것이었다.<sup>27)</sup>

自治機關에 부여된 또하나의 주요한 자치권의 내용은 地域經濟를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延邊은 여러가지 地域事業을 운영할 수 있다. 上級 국가기관으로부터 自治州에 분배되는 資源은 需要에 따라 自治州 自治機關에 의해 독립적으로 통제 사용될 수 있다. 州內의 각종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投資 補償 貨貸 등의 규모는 自治州에 의해 사용 배분된다. 예컨대, 1978-85期에 國家와 省이 延邊에 특별항목으로 1,000餘萬元을 주었는데, 자치정부는 그중 25%를 邊方建設에, 40%는 輸送費用에, 36%는 開發이 늦은 지역을 원조하기 위해 투입하였다. 또한 延邊의 제9차 人民代表大會는 1986-92期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工農 생산의 57.8% 확대(매년 9.5% 성장), 人民收入의 61% 성장, 國立大學과 특수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16% 성장으로 설정하였다.<sup>28)</sup>

이와 같이, 憲法이나 自治法에서 규정한 自治權의 내용이 延邊 自治州에서 행사되지 못했다는 적극적인 흔적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自治機關內의 조선족 간부의 비율이 조선족 인구의 점유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조선족의 언어와 문자가 자치기관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민족정책, 특히 민족구역자치가 延邊朝鮮族 聚居

26) Chae-Jin Lee 前掲論文, p.94

27) Shangzhen Jin 前掲論文, p.35

28) 上掲論文, pp.40-41

地域에서는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왔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인가.

#### 4. 民族區域自治의 原則과 實際

우리는 지금까지 中國에서 실행되어온 민족구역자치의 理論과 實際를 살펴보았다. 憲法에 규정된 民族關係 條文들을 통해 民族政策의 방향과 정신을 검토하고 自治法의 내용을 정리하여 민족구역자치체의 이론적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延邊朝鮮族自治州의 설립과 운영과정을 통해 민족구역자치체의 實際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國家의 統一을 위하여 平等과 自由를 少數民族에게 보장한 憲法과 自治法의 精神이 역사의 現實에서도 상당부분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민족구역자치가 中華人民共和國의 建國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실행되어 왔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大躍進運動(1957-59)과 大文化革命(1966-76) 기간중에 憲法의 民族關係 規定이 크게 後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極左的 분위기가 충만하였던 이 두 기간중에 中國의 민족정책은 흑독한 시련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20여년간 지속된 中國의 이 두 大衆運動은 문화적 統一과 정치적 中央集中化라는 궁극적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民族自治의 근본 前掲에 도발하고 少數民族을 一元化 혹은 統合하려는 정책을 표현하였다.<sup>29)</sup> 급진적인 漢族 지도자들은 소수민족이 고유의 문화적 사회적 계획을 포기하고 우월한 漢文化에의 從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漢族은 많은 人口와 긴 歷史를 갖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비교적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우리의 民族大家庭 안에서 중심된 民族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 발전의 결과이다. 帝國主義의 침략을 물리치고 社會主義 祖國을 건설하며 각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이 漢族의 集中的 指導力 아래서 團結을 강화하는 것이

29) Chae-Jin Lee의 上揭논문, p. 101

매우 중요하다.’<sup>30)</sup>

延邊에서는 大躍進運動이 反黨 反漢族으로 낙인찍힌 ‘資本主義的 右派’와 ‘地方民族主義者들’에 대해 집중되었다. 몇몇 朝鮮族 幹部와 知識人 가운데는 그들이 漢族보다 더 우수한 민족이라고 주장하거나, 民族自治의 外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치권력은 漢族이 獨占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다. 그들은 東北地區의 모든 朝鮮族이 大統合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전시키기도 했고, 어떤이는 延邊이 高句麗 領土의 일부로서 韓國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몇몇 조선족 民族主義者들은 ‘自治는 나쁘고 獨立이 좋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sup>31)</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憲法의 序文과 總綱에서 民族政策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항상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의 극복을 함께 강조하였다. 大漢族主義는 民族壓迫과 民族差別을 결과할 것이고 地方民族主義는 民族團結을 저해하고 國家統一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의 克服 그 자체가 中國 民族政策의 目的이요 民族區域自治制의 存在意味라 할 수 있다.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가 직접 충돌한 大躍進運動 기간은 民族自治制가 存亡의 위기에 빠진 시기였다.

文化革命은 朝鮮族의 自治에 이보다 더 위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1982년에 출판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文化革命중에 延邊에서 4천여명이 처형되고 5천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만명이 투옥 혹은 조사받았다. 많은 조선족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集團農場이나 勞動現場으로 보내지고 혹은 北韓으로 亡命하였다. 연변은 民族自治가 國家的 統合성을 희생시키는 少數民族地域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朝鮮族은 朝鮮語에 대한 교육과 문화 계획을 증지하도록 강요받았으며, 中國語 프로그램에 높은 우선권

30) <朝鮮族簡史>(長春, n.p., 1964) pp.212-213

31) <偉大祖國의 延邊朝鮮族自治州>(北京, 民族出版社, 1957) p.18

을 부여하도록 강요받았다. 비교적 잘 교육받고 정치적 의식이 높은 다수의 延邊 朝鮮族이 정치적 논쟁과 격렬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 사이의 이념적 정치적 투쟁이 극단적이고 과도하게 진행되었고, 이러한 내분은 중앙에서의 紅派 專派의 權力鬭爭과 연관되어 더욱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文化革命 기간중에 中國과 北韓은 어려운 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延邊이 祖國 韓半島와 지리적으로 近接해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sup>32)</sup>

毛澤東이 죽고 四人幫이 제거된 뒤에 많은 少數民族 지도자들이 復權되고 民族自治制가 부활하였다. 그러면 極左 大衆運動 이후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가 극복되었다고 볼 것인가. 특히 延邊의 경우,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兩者의 갈등이 소멸되었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中國의 民族理論家들에 의하면, 大漢族主義에 의한 민족압박과 차별, 그리고 地方民族主義에 의한 國家分裂의 위험성이 中國에서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서는 기존 民族關係의 소멸에 의한 새로운 民族의 형성, 즉 民族融合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社會主義的 民族關係가 최고도로 발달하여 共產主義的 民族關係로 質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sup>33)</sup> 현재 中國의 人民들, 특히 朝鮮族들이 民族理論家들의 理想에 동의하는지, 혹은 共產主義的 단계가 멀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는 자못 의문스럽다.<sup>34)</sup>

〈自治法〉序言은 民族區域自治가 ‘中國共產黨이 마르크스 레닌主義를 運用하여 우리나라의 民族問題를 해결하는 基本政策이요 國家의 중요한

32) Chae-Jin Lee 前掲論文, pp.101-102

33) 趙政男, 〈中國의 民族問題〉(서울, 教養社, 1988) pp.177-189

34) 筆者가 今年 6월에 延邊에서 시도한 간단한 現場調査에 의하면, 延邊의 일반 朝鮮族은 지금의 民族政策 혹은 民族區域自治에 대하여 대체로 滿足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沈黙하지만, 知識人이나 幹部들은 不滿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沈黙하였다. 이러한 狀況調査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學問的 資料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政治制度'이라고 규정한 다음, <自治法>制定의 四項 基本原則을 제시하였다.

'民族自治地方의 各族 人民은 全國의 人民과 함께, 中國共產黨의 領導 하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毛澤東主義의 指導하에, 人民民主專政을 堅持하고, 社會主義路線을 踐지하면서, 力量을 集中하여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을 進行하고, 民族自治地方의 經濟와 文化의 發展을 加速시키고 團結되고 繁榮하는 民族自治地方을 건설하며, 각 민족의 共同繁榮을 위하여, 祖國을 高도로 文明化하고 高도로 民主的인 社會主義國家로 建設하기 위하여 노력 분투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民族區域自治는 人民民主主義獨裁와 社會主義路線을 굳게 지키면서 Marx-Lenin主義와 毛澤東主義의 지도와 中國共產黨의 영도하에 實施되어야 한다는 理想的 範疇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自治機關이 自治權을 행사할 때도, 國家의 統一을 옹호하고 憲法과 法律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하고, 國家 전체의 利益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上級機關이 내린 임무를 우선적으로 완수해야 하며, 本地方내의 各 民族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各 民族 自治地方의 民族政府는 國務院에 服從해야 하는 등의 義務를 지켜야 한다.<sup>35)</sup>

뿐만 아니라, 憲法과 自治法에 의해 부여된 自治權이 명실상부하게 행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民族간의 平等을 보장할 수는 없다. 少數民族이 정치적으로 漢族과 同等한 權益을 향유할지라도, 文化적으로나 經濟적으로 均衡을 이루지 못한다면, 民族平等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經濟的 平等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中國政府도 '歷史上 남겨져온 民族間的 經濟 文化 發展사의 事實上 不平等이 長期間 존재하기 때문에, 政治上 법률상의 平等權利는 획득했으나 사실상의 不平等은 엄

35) 吉林省普法辦公室 吉林省民族事務委員會 編, <民族區域自治法輔導>(吉林省內部資料 准印證 第7680號, 1987) p.17

연히 존재하고 있다.’<sup>36)</sup>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상의 不平等’을 해소하기 위하여 <自治法>은 國家가 人力 物力 財力 등 다방면에서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少數民族이 위치한 邊方이 國家經濟開發의 과정에서 疏外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중국의 民族政策과 관련하여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少數民族들이 견지하고 있는 독자적 民族意識일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憲法과 <自治法>이나 官邊의 民族理論家들은 民族平等을 실현하여 民族團結을 이룩한 다음, 민족간의 相互協助와 相互學習 相互交流를 통해 民族融畧을 이루고, 마침내 기존의 民族區別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中華民族을 형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티벳<西藏>민족의 지속적인 抵抗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少數民族의 自意識은 의연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延邊의 朝鮮族은 文化的 教育水準이 漢族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現代中國의 건설에 크게 貢獻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데다가<sup>37)</sup> 독립된 祖國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한 민족의식은 다른 어느 少數民族보다도 높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들이 自治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sup>38)</sup> 소련 등 周邊狀況의 변화와 開放등 國內狀況의 전개에 따라 기존의 ‘民族區域自治體制’가 이들 소수민족들의 遠心力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구를 통하여서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36) <民族區域自治法輔導> p.106

37) 延邊의 朝鮮族은 抗日鬭爭과 國共內戰 韓國戰爭 등에서 큰 값을 치루었다. 內戰중에 延邊에서 戰場으로 보내진 26,551명중 84.9%가 朝鮮族이었고, 韓國戰爭중에는 4,634명이 中國義勇軍으로 참전하고 75,755명이 방어를 위해 동원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치른 희생의 대가를 기대할 수 있었다.(Shangzhen Jin 前揭論文, p.41)

38) 筆者가 시도한 非體系의인 現場調査에 의하면, 延邊 朝鮮族의 대다수가 所屬感을 표현할 경우, 國家的 所屬感이 民族的 所屬感에 優先한다고 한다.

## IV. 延邊 朝鮮族의 言語實態와 그 特性

많은 의문의 문제들 가운데 本章에서 우리가 가지는 관심의 초점은 朝鮮族의 言語 問題이며, 그들의 언어생활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부단히 加重됐을 언어적 침해와 간섭은 어떠한 것이었고, 또 그것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실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지 하는 여러 국면의 문제에 모아진다. 그 까닭은 민족과 언어를 本質的으로 表裏一體의 관계로서 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克明하게 밝힐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성숙된 여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작업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게 마련이지만, 특히 문헌자료를 비롯하여 현지의 언어적 情況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는 脆弱性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큰 장애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광범하게 보완해야 할 일로 남겨 두려니와, 우선 우리 눈앞에 잡자기 다가선 과제인 만큼 연구의 기초를 다진다는 성격의 작업에 만족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그러한 뜻에서 다음에 朝鮮族의 언어생활의 특수성을 살펴 볼 것이고, 특히 그들의 언어생활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특수한 言語現象들에 대하여 차례로 고찰해 가겠다.

## 1. 朝鮮族의 言語生活

中國은 漢族을 주체로하는 多民族 國家다. 黨中央 제11기 제3차 會議 이후 民族政策이 새로운 局面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전 시대에 비해 相對的으로 나아졌다는 것이지 오래동안 쌓여온 少數民族과 主體民族의 관계가 일시에 해소된 것으로 이해할 문제는 아니며,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言語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며,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수용된다. 中國의 公用語는 漢語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少數

民族에게도 적용되는 共通語다. 그러나 이 원칙과 함께 각개 民族의 자치주에는 그 民族의 言語를 별도의 公用語로 인정하는 複合公用語制度<sup>39)</sup>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朝鮮族 자치주에는 漢語와 함께 우리말이 公用語로 규정되므로써 朝鮮族의 言語生活에서 우리말이 차지하는 위상이 공식화되었다. 그리하여 朝鮮族은 複合公用語를 가지는 民族共同體로 되어 있으며, 결국 二重言語者들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朝鮮族의 言語는 中國이라는 국가의 共通語인 漢語를 상위어로 하면서 特定地域의 特定民族에게 필요한 下位語를 인정하게 되는 제도에 따라 우리말이 下位の 公用語가 되므로써 우리말로 생활하며 계승, 발전할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二重言語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제도는 소련과 中國을 비롯하여 많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그들의 국가목표나 民族政策을 균형있게 이끌기 위해 절충적 장치로 수용된 言語政策이었다. 그러므로 특수한 조건들이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상황아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쓰이는 少數民族의 言語, 즉 우리말은 漢語를 비롯한 여러 民族語로 둘러 쌓인 이른바 言語섬의 특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言語섬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존속, 유지하는데 있어 끊임없는 外的 壓力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이며,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支配言語에 同化되고 마는 限時性을 가지는 것이 通例다. 朝鮮族의 우리말이라고 해서 이러한 속성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순수한 독자적 言語原理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결코 아니며, 알게 모르게 우리말의 고유영역이 그의 끊임없는 침해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自衛防禦하지 않는 한 앞날이 보장될 수는 없다. 言語섬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 시대에 겪은 中國 移住民史가 말해주는 우리 民族과 言語의 失蹤은 오늘의 朝鮮族과 우리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교훈이 아닐 수

39) 북수국어제나 북합국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敏洙 “언어와 민족의 문제” 「二重言語學會志」 참조

없다. 中國의 국가적 시각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多民族, 多言語를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며 다만 현실의 臨床的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러한 言語섬의 폐쇄적인 孤立性을 더욱 強化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마침내는 國家共通語에 融合 同化하는 원대한 목표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맞서 民族語를 보존하려는 民族간에는 목적하는 바가 相反하는 抵抗性의 대립의식이 있게 마련이다

中國의 少數民族語의 하나로 인정받은 우리말이 길이 보존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民族政策의 기본원칙에서 각개 民族語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우리 民族共同體가 대단위로 확고히 서 있어서 凝集된 民族意識으로 강한 구심력을 이루어 집단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 조건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의 것이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民族的 집념과 노력이 없이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逆으로 풀어보면 朝鮮族의 二重言語生活에서 우리말을 지키는 문제는 단순히 일상생활의 편의성의 차원이 아니라, 비록 言語섬의 환경조건에 묶인 고립된 상태일 망정 그것을 지키므로써 이것을 求心體로하여 民族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 단합된 힘으로 民族的 活動을 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기 된다는 점에서 民族의 생존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그 동안 朝鮮族이 가진 逆境의 惡條件을 극복하면서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의지와 활동들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民族 生存의 基盤과 力量을 蓄積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本國에서의 活動이나 成果와는 견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 2. 朝鮮族의 言語問題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現象

朝鮮族의 言語생활이 현재와 같이 우리말과 漢語를 함께 사용하는 제

도로 정착되어 본격적인 二重言語생활의 발전단계에 접어든 것은 1945년 이후의 일이다. 그전의 정황은 우리 民族이 나라를 잃고 漂流하고 있던 시기에 유독 言語만이 제증심을 지탱하면서 지켜갈 힘을 유지할 여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言語生活도 뿔뿔이 흩어져 漂流할 수 밖에 없었으니, 그래도 안으로는 우리말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은 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異言語와의 接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밖으로부터의 충들과 간섭을 면할 길은 없었다. 그러한 침해는 당연히 세대를 거듭할 수록 더 심화되고 현실적인 실리를 쫓는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母國語를 포기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도 사실이다.

과거 朝鮮族이 겪어온 言語生活의 실상을 낱낱이 알수는 없으나, 漂流하던 시기의 한 단면을 살필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 朱河龍 一家의 言語情況 調査<sup>40)</sup>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 조사의 대상이된 朱河龍은 본시 함북 회령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으로 1920년대에 일제의 억압에 못이겨 술가하여 越境, 吉林省 龍井縣에와 역시 농사를 짓게된 평범한 移住民이다. 그후 그집안은 5대가 이어지면서 83人的 자손을 두게 되고(19人是 死亡) 주거지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대다수는 역시 延邊에 살며, 그중 51인이 農村에, 32인은 非農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보이고 있는 이들의 言語 驅使能力의 分析을 보면 二重 및 三重言語者의 유형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類	型	人 數	在 世 人 數	代 數
1	朝語·古漢文 雙語	2		2
2	朝語·俄語 雙語	1		2
3	朝語·古漢文·俄語 三語	1		1
4	朝語·古漢文·漢語(普通話) 三語	1		3
5	朝語·日語·漢語 三語	3	3	3, 4
6	朝語·漢語 雙語	17	17	2, 3, 4

40) 崔吉元: “朝鮮族朱河龍一家五代人的 單, 雙三語情況調查”〈中國語文〉1984. 6 p.439

여기 '古漢文'으로 분류한 것은 한문을 우리독음으로 읽고 그문장을 이해하는 文語의 言語능력을 가진 경우로서 千字文이나 四書五經類에 능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朝語·古漢文 雙語'의 유형은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지식인에 해당하며, 俄語, 漢語와의 관계는 여기가 삼국의 交界地區라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고, 日語는 일제의 침략에 연유한 관계다.

이 조사 통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과 해석이 있을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들 一家가 현재와 같은(6의 '朝語·漢語 雙語') 二重言語者로 정착되기 이전 단계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言語환경을 걸어왔는가를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오늘의 朝鮮族의 국어문제는 대외적으로 漢語와의 並存關係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부담을 안고 있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어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갈고 닦아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양대과제를 가진다.

이 두가지 과제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서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 본시 이질적인 두 언어의 공존관계란 전적으로 보완적일 수만은 없으며, 오히려 서로를 侵害, 干涉하는 障礙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對漢語 關係의 어려운 문제는 논외로 하거니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내적인 대응의 문제라고 할 우리말의 현실적인 단면을 살핀다.

朝鮮族의 우리말은 우선 표준어 문제에서부터 基準語의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원론적으로 하자면 朝鮮族은 그들이 처해있는 특수한 사회여건을 반영하는 '기초방언'을 査定하여 독자적인 표준어로 삼는 것이 되겠지만 아직은 그러한 단계까지 발전된 상황이 아니다. 독자적 발전으로 가는 기반구축의 단계에 있는 오늘의 상황은 역시 모국의 표준어에 기초를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성에 대하여 중국의 기초방언을 따로 정할 수도 없거니와 따로 정할 필요도 없다는 根據를 정경언(1989)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朝鮮族들 자체의 독립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없고,

(2) 그에 따르는 언어 중심이 있을 수 없으며,

(3) 지금까지 써 온 標準語 체계가 있기 때문<sup>41)</sup>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미 형성된 母國의 표준어를 기준으로 잡을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難題가 있으니, 곧 분단이후 남북이 각기 다른 기준어(南韓은 ‘교양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 北韓은 ‘평양말을 기준으로 한 문화어’)를 표준어로 하는 두 개의 표준어를 가지게 되었고, 점점 그 이질성이 增幅되어 대립하고 있는 이 두가지 중 어느 것을 그들의 표준어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국어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도 言語外的인 政治, 社會的 問題와 얽혀 微妙한 문제가 되어 있으며, 그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견해와 주장이 있어 왔지만, 대체로 이제까지 견지해 온 ‘조선어 기준어휘는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sup>42)</sup> 한다는 기반위에서 査定해야 마땅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듯한데, 기준어휘라 함은 分斷 以前, 즉 1945년 이전에 형성된 표준어를 이르는 것이며, 이러하므로써 현실적인 葛藤을 迂廻하는 효과도 있다

### 3. 漢語化 現象

중국의 이른바 ‘主體民族語,’ 즉 국가적 공용어는 漢語며, 朝鮮族의 우리말은 어디까지나 少數民族語의 하나일 뿐, 中國의 國語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 언어 간의 평등성이나 자주성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漢語와는 上下位의 관계에서 複合合用語의 특성을 가질 뿐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결국 그러한 제약하에 놓이는 민족어는 ‘언어섬’의 특성을 띠게 되고, 그것은 상위공 용어로부터 부단한 간섭을 받는다는 의미도 된다. 이에 대한 불가피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때문에 民族

41) 정경언: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범화에 대한 소견” 「조선학 연구」 제1권, 연변대학 출판사, 1989. p.322

42) 정경언의 전체 논문 p.322

語의 原形이 파괴되고 기형화 된다는 문제가 되고 보면, 朝鮮族이 이에 대하여 심각한 憂慮와 警戒를 가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朝鮮族이 할 일이란 漢語와 우리 민족어와의 접촉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로 인한 부정적 侵害를 排除하거나 極小化시키는 방안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朝鮮族은 벌써부터 우리말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역경을 딛고 뜻과 지혜를 모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해 왔다. 거기에서 떠오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긴박하고 핵심적인 일이 되었던 것은 漢語化를 저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김현근(1979)<sup>43)</sup>는 漢語의 영향과 漢語化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가지 현상이라고 하면서, '漢語化란 한마디로 말하면 각 少數民族어의 발달법칙과 언어습관을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漢語를 받아들여서 쓰는 불량한 언어현상'이라고 그 개념을 정리하였다

언어간의 접촉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音韻과 語彙다. 그런데 각 언어는 제마다 고유한 音韻과 어휘의 구성체계를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말의 체계에 맞추어 수용하고 차용되지 않은 침입자의 성질을 띤 漢語의 요소가 뒤섞인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말의 體系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두 언어 중 어느 쪽의 것도 아닌 기형의 것이 된다. 따라서 濾過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언어 요소는 철저히 배격하여 고유한 법칙체계를 보존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합법칙적인 차용까지도 거부한다는 것은 이 또한 언어의 속성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漢語化를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니와, 이보다 못지 않게 이문제가 기본적인 해결을 위해 朝鮮族에게 요구되는 要諦는 漢語의 民族語化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漢語化의 극복은 漢語의 民族語化로써 대처하는 길이 최선이 된

43) 김현근: "한어화 현상에 대하여" 「연변대학학보」 1979. 3 pp.68-76

다. 朝鮮族은 이부분에 있어서도 혼란을 경험했다. 사회 모든 분야가 그러했듯이 ‘文化革命’, ‘四人幫’시기에 겪은 혼란이 그것으로, ‘少數民族의 언어는 낙후하다’느니 ‘少數民族의 언어는 쓸모가 없다’는 식의 臆說을 앞세워 소위 ‘共通成分’을 증가해야 한다면서 漢語化를 극대화하는 바람에 民族語化는 숨을 죽여야한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反轉된 상황으로 돌아와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때에 입은 傷痕이 말끔히 가신 것은 아니어서 깊숙히 침투한 그 파문이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 漢語와 우리말의 어휘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 漢語化와 民族語化의 한 단면을 보기로 한다. 우리말의 어휘구성은 한자어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漢語와의 공통성분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나, 그렇지 못한 까닭은 우리말의 한자음이 漢語의 그것과 다르며, 문법적인 규칙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같은 한자로 되고 유사한 음으로 읽힌다 하더라도 漢語와 우리말은 통하지 않는데, 그것은 漢語가 四聲을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로의 조어법이나 단어결합 그리고 造語에 있어서 대상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같지 않은 점이 많다. 가령 漢語와 우리말이 다르게 대응하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그 이질성의 일단을 확인하게 된다

漢語	우리말
<飛機>	<飛行機>
<汽車>	<自動車>
<火車>	<汽 車>
<自行車>	<自轉車>

漢語化에 대한 우려와 그것을 극복해야겠다는 논거는 우리말을 일반적으로 밀어부치고 생경한 漢語를 그대로 移植하므로써 우리말의 고유 특성을 침투, 약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문제이지, 漢語의 社會文化的 영향

이나, 정상적인 借用의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현상과 언어와의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류로서 兩言語間에 두루 유익하게 작용한다. 만약 이것마저 막는다면 그것은 언어의 기능을 위축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朝鮮族의 언어접촉에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할 것은 借用이 아니라 言語外的인 압력이나 非民族語的인 漢語化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漢語化 현상에서 첫째로 꼽히는 분야가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말 안에 있는 기존 語彙를 마구 밀어 부치는 일인데 漢語化 어휘의 대부분이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 가령 김현근(1979)에 제시된 예를 참고하면 이러하다

漢語化 語彙	既存 語彙
상충건축	상부구조
교학대강	교수요강
비과	교수준비
성본	원가
족구	축구
경제기초	토대
교학계획	교수, 수업
과당토론	학과토론
초생	학생모집
유인	등사
사기	운전수, 운전사

한편, 이와 함께 몇 가지 부문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도 있으니, 그것들을 추려본다

1) 造語와 單語 결합의 수법이 漢語와 우리말은 다르다

가령, ‘說, 講, 談, 論’은 때로는 뜻을 서로 통하여 쓸 수 있으나, 다른 것과 결합할 때의 방식은 같지 않다. ‘話’와 ‘社’와의 결합관계에 보면, 漢

語에서는 說話, 講話, 談話/社論 등이 가능하나, 論話/社說, 社講, 社談 등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우리말에서는 오히려 社說, 演說 등은 가능하나, 社論과 같은 결합형은 이루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에서 표출되는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廢鐵 → 破鐵    吸取 → 吸收, 攝取    里程碑 → 里程標

回憶 → 回想    噴氣式 → 噴射式    農忙期 → 農繁期

片面性 → 一面性    人造衛星 → 人工衛星    聯合聲明 → 共同聲明

2) 熟語나 成句 등의 결합과 造成法에 있어서도 다르다

世世代代 → 代代孫孫    萬水千山 → 千山萬水    自私自利 → 私利私欲

3) 複合語句의 結合順位가 서로 다르다

단어의 合成, 結合에 있어 그 순위가 바뀌는 일은 漢語나 우리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漢語: 互相-相互 愛憎-憎愛 喜歡-歡喜/ 우리말: 先祖-祖先 習慣-慣習 果實-實果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들은 漢語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말의 결합규칙을 어기는 일이 되므로 그럴수 없다. 加倍, 證實, 畜牧, 婦產科……

4) 漢語 그대로 우리말의 단어가 될수 없고 添削이 가해지는 경우

添加되는 경우: 產量 → 生產量    刊物 → 刊行物    導彈 → 誘導彈

專家 → 專門家    新生 → 新入生    對方 → 相對方    舞劇 → 舞蹈劇

文物 → 文化遺物    家長制 → 家父長制

削除되는 경우: 質量 → 質    白皮書 → 白書    食物中毒 → 食中毒

武裝力量 → 武裝力    不可分離 → 不可分    金質메달 → 金메달

5) 같은 어형의 단어인데도 의미의 연합이 漢語와 우리말이 다르다

‘工作’과 ‘事業’; 公작계획 → 사업계획, 교육공작 → 교육사업,

선전공작 → 선전사업……

‘教育’과 ‘教養’; 계급교육 → 계급교양    설복교육 → 설복교양

사상교육 → 사상교양……

‘水平’과 ‘水準’; 정치수평 → 정치수준    생활수평 → 생활수준

문화수평 → 문화수준……

‘業務’와 ‘實務’ ; 업무수평 → 실무수준    업무학습 → 실무학습

업무능력 → 실무능력……

이밖 漢語 현상으로 우리말이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유형이 적지 않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제기된 것만을 정리하는데 그치거니와, 더더욱 이같은 현상은 비단, 어휘 분야에 한하지 않을 것이며, 음운, 문법의 분야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역시, 漢語化는 문제가 된다. 가령 우리말에서 단장(團長), 패장(排長), 쓴채(酸菜) 등으로 쓰고 있는 현상은 모두 音韻 分野의 문제로서 漢語음이 그대로 밀어 부친 경우라 하겠다

#### 4. 새 語彙의 增加 現象

역사적으로 한자문화권에 속해 온 우리말이 漢語로부터 차용된 한자어를 가지게 된 것은 새삼 그 당부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아무튼 한자어는 국어의 어휘구성체계에서 고유어와 맞먹는 별도의 계열을 이룰만큼 그 비중이 높아져 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유어휘가 한자어에 밀려 交替되는 부정적 측면의 변천과정도 거쳐 왔지만 한자의 長點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新造語의 생산 능력에 의해 어휘의 수급이 원활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러가지 역사적 배경에서 生成되어 이미 우리 어휘체계에 오른 한자어는 그렇다치더라도, 새로운 생산관계에 밀려 마구 유입하는 한자어의 증가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현상은 漢語化와 함께 朝鮮族의 언어문제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朝鮮族이 대하는 이같은 한자어문제는 모국어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현실이기 때문에 母國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령, 한자, 한자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배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비언어적인 오류가 될수도 있다. 그렇다고 방임이나 濫用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적정수준을 정하여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은 朝鮮族에 의해 반

드시 주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漢語와의 關係〉

광복 후 朝鮮族의 우리말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많은 새 단어들(어휘)이 기존의 어휘구성 안에 들어왔다. 우리말이 다른 언어를 차용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제약을 관여시켜 수용하는데, 모든 어휘범주를 명사범주로 받아 들이는 특성이 그 하나다. 한자어의 경우도 이 원칙은 지켜진다. 만약 다른 범주의 단어를 빌리겠다고 하면 본래의 범주와 관계없이 일단은 명사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다시 用言化하거나 副詞化하는 文法的 節次를 거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原音대로의 音借가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자음으로 音譯하여 借用하는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한자어란 모두 이 제약규칙에 부합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漢語化에 의한 일방적인 移植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 후에 급격히 늘어난 한자어의 증가는 漢語化 現象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따라서 이시기에 이루어지는 새 한자어의 증가 현상은 앞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밀어 부친 침식이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民族語化의 여과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긍정적 평가에 값한다 하겠고, 특히 이전 시대에 빈번했던 한자어와 고유어의 교체와 같은 폐단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한층 굳히는 하나의 방증이 된다. 간혹 교체된 예도 보이나, 그것은 ‘월사금 → 학비, 선비 → 지식인, 지식분자, 도회 → 성지, 곡마단 → 교예단’ 등과 같이 新舊語의 교체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어휘 발전의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현상은 아니었다

이러한 증가 현상의 수용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延邊 言語研究所 言語研究室(1984)<sup>44)</sup>도 역시 이에 대하여 ‘조선어 어휘의

44) 연변언어연구소 언어연구실; “해방후 조선어어휘구성에 보충된 새 명사, 술어” 『조선어학논문집』(1) 1984. 민족출판사 pp.158-177

발전에 대한 漢語의 적극적인 영향을 긍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한자어의 증가현상이 朝鮮族의 어휘구성에 현실적으로 기여하면 했지 그 때문에 민족어의 주체성이 침해되거나 약화되지는 않았다는 긍정적 평가는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광복 후 지금까지 全時期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변함없이 그러하지는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漢語化 現象을 말하는 가운데서도 언급됐지만, 1958년 <大躍進> 후의 한 시기와 <文化大革命>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이른바 <左의偏向>은 한마디로 말하여 漢語로부터 받아들이는 어휘는 모두 漢語化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다. 당시 이 <左의偏向>을 주도한 논조는 각 민족어가 새 어휘를 받아 들이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각 민족언어의 공통성분을 점차 증가하는데 유익하여야 한다,' '각 민족언어에서의 공통성분의 점차적 증가는 이미 사회주의건설시대의 우리나라 민족언어발전의 자연적 추세로 되었다,' '음역의 방법은 조국의 각 민족언어로 하여금 음과 뜻을 서로 결합시킨 공통성분을 증가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각 민족이 호상 흡수하는 어휘는 마땅히 음역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긍정할 수 있다,' '조국 언어의 공통성분이 증가하는 추세와 漢族과 형제민족들의 언어 학습의 편리에 적용하기 위하여 漢語 新借用語는 힘껏 한어병음방안의 어음서사법을 따르거나 참조해야하는 바 이는 마땅히 공동히 준수해야할 원칙이다.'<sup>45)</sup> 이와같은 <左의偏向>은 그들이 사상이론적인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이나 당의 소수민족 정책에도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sup>46)</sup>이라고 비판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시기는 민족언어의 융합시기가 아니라, 각 민족언어가 자체의 內部發達法則에 따라 자주적으

45) 연변언어연구소 언어연구실; "해방후 조선어어휘구성에 보충된 새 명사, 술어" 「조선어학 논문집」(1) 1984. 민족출판사 p.171

46) 연변언어연구소 언어연구실의 전계 논문 p.172

로 발전하는 시기라는 것이고, 만약 민족간의 특성을 부정하고 융합을 내세워 강요한다면 그것은 동화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비록 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의 우리말에 나타난 語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은 많은 漢語音借語가 무분별하게 섞여 들었던 것을 알수 있다. 귀즈(果子), 맨뽀(面包), 빙귀(水果), 찰자(專家), 찬단(傳單), 따밍따팡(大鳴大放), 따즈보(大字報), 쓰프(師傅)

한편, 이와같은 음차법의 강요와 함께 이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기는 하나 우리말의 어휘구성법에선 받아 들일 수 없는 漢語 語彙를 음차가 아닌 우리의 음독법으로 마구 밀어 붙인 경향도 범람하였다. 이것 또한 우리말의 어휘구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니, 漢語를 우리의 漢字音讀法으로 읽기만 하면 곧 우리말의 한자어체계에 등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말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령, 이 때문에 기존의 우리말이 음독된 漢語에 밀렸던 예들이 많았던 것도 이런 현상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쟁 → 경색, 계약 → 합동, 도시 → 성시, 노동자 → 공인, 연극 → 화극……

이상 두가지의 침해는 <左的偏向>의 시기가 낳은 부산물이며, 朝鮮族의 언어생활 속에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고, 이러한 잔재는 반드시 淨化되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 <母國言語와의 關係>

朝鮮族의 언어문제에서 母語와의 관계를 이른바 <한칼로 벤듯이>라는 표방 아래 단절하여 마땅히 두 언어간의 차이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밀어부친 시기가 있었다. 그것은 역시 <文化大革命>때의 일이다. 이것이 옳지 않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다른 사회현실에서 만들어진 새 어휘를 단지 모어의 어휘구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어의 새 어휘들을 마구 옮겨 놓는다는 것도 朝鮮族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이

처럼 우리 민족과 우리 언어의 단일성이라는 원칙론의 단계에서부터 특수한 상황적 성격으로 규제를 받는 朝鮮族의 言語는 이들중 어느 쪽도 자신들의 현실을 만족시켜 주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朝鮮族의 우리말과 같은 것을 넓은 의미의 '언어섬'으로 보았거니와, 역시 朝鮮族의 우리말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특수성을 배경으로한 朝鮮族 스스로가 언어주체가 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할 때만이 어휘구성의 기준이 뚜렷해지고, 모어와의 관계에서 선별적으로 取捨할 調整機能도 확보된다 하겠다. 그리하여, 언제나 朝鮮族의 실정과 朝鮮族의 언어생활에서 제기되는 요구, 그리고 그 특성이 모두 반영되는 어휘구성을 이루어야 하겠다.

##### 5. 朝鮮族의 言語 規範化

朝鮮族의 민족어 즉 우리말이 가지는 特殊性에 대하여는 앞에서 거듭하여 밝혔듯이 그들의 모국어와는 判異하게, 中國의 公用語이자 主體民族의 언어인 漢語에 둘러 싸인 言語섬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이것의 規範化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몇 가지의 規範化 대상 가운데서도 특히 어휘 분야는 그것이 언어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니와 가변성이 많아서 規範化의 主對象이 된다. 그런 만큼 이것의 規範化에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基準語를 어떤 것으로 잡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朝鮮族의 언어주체는 朝鮮族일 뿐, 母國民도 아니며 물론 漢族도 아니라는 을 밝혔거니와, 따라서 基準語도 母國語를 기반으로 하되 母國語 그 자체일 수는 없다. 분단상황에 있는 母國에서 각기 '標準語'와 '文化語'가 있어 별도로 기준어를 설정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남북언어의 異質化가 심화되어온 현실이고, 또한 朝鮮族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 그 어느 쪽의 基準語에도 그들의 언어실정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어느 쪽도 그들의 基準語로 적합치 않다. 그렇다면 결국 朝鮮族의 기준어는 현재 중국에서 쓰고 있는 朝鮮族의 우리말, 즉 제3의

기초방언을 기준어로 잡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단순치가 않으며, 우선 그것은 기준어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두루 갖추 수가 없었던 특수한 우리말이라는 데서 과연 그것으로 기준어를 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사실 朝鮮族은 중국 내의 少數民族의 하나로서 그 자체는 정치, 경제, 문화의 자주성이 없으며, 따라서 언어생활을 이끌고 결집시킬 언어 중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큰 취약점이다. 한편 朝鮮族의 우리말 속에 분포하고 있는 방언 실태도 단순치 않아 마치 모국의 여러 지역어들이 모여 混合 縮小된 듯한 양상을 띠고 있어 갈피가 잡히지 않는 것도 지적된다.<sup>47)</sup>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느 한편에 기울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문제를 풀려는 태도로서 초기단계부터 1945년 이전에 모국에서 査定, 通用하고 있던 표준어를 받아 들여 '조선어 기존 어휘를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 노선을 설정하게 된다. 많은 論難과 集會를 거쳐 採擇되고 實施해온 이원칙, 즉 분단이전 시기에 모국에서 통용되던 標準語를 기준어로 한데 대하여는 별 이론이 없는 듯하며, 다음으로는 그 후에 각각 다르게 전개된 사회 현상에 따라 달라진 어휘구성의 문제가 당면 과제가 되었다.

朝鮮族의 어휘규범화에 있어 우리말의 傳統性和 純潔性を 지키고 발전하여 나아가는 기반은 우선 위와 같이 기준어를 설정하므로써 확보됐다고 할지 모르나, 그후 사회현상의 변화나 언어의 사회기능적 측면에서 한어와의 공통성분을 증가해가려는 실리적인 요구가 끊임없이 작용하여 이 두가지 성향은 때로는 서로를 부정하는 투쟁의 양상을 띠면서 심한 마찰을 빚어 왔다.

47) 각 방언간의 상대적인 우열관계는 있겠으나 제주도 방언을 뺀 모든 방언이 혼재하는 사실과 그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 있으며, 그것은 조선족의 말을 규범화하는데 쓰일 재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 宣德五, 趙習, 金淳培: 「朝鮮語 方言調査 報告」 延邊人民出版社, 1990

이 갈등은 그 정도는 다르나 지금도 尙存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朝鮮族의 언어문제에 있어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언어가 이와 같은 이중성을 갖는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 져야 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否定하거나 排他的으로 對立하는 관계로 풀수는 없는 문제며, 어디까지나 공존할 수 있는 折衷과 調和의 妙를 찾아서 균형을 잡아가는 길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제안이 있어 왔고, 그에 따라 올바른 방향에서 그들의 독자적인 規範化가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역시 원칙과 현실의 불협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현저하며, 특히 社會생활의 여러 조건들이 한어와의 접촉을 확대해가는 趨勢임을 감안할 때, 한어의 直接的인 影響은 더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현장의 정황은 규범과 현실의 틈이 加速化할 것이고 또 그 범위도 擴散될 것이 예측된다. 만약 이러한 틈을 좁히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放置한다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言文不一致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언어생활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가령, 그들의 문장어에서는 '로동자'라 하는데 일상으로 말할 때는 거의 모두가 '공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二重性은 시급히 克服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굳이 기준어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원칙에만 執着할 것이 아니라 漢語化한 어휘는 철저히 沮止하되 借用 規則에 따라 造成한 어휘는 현실에 맞게 병용 내지는 교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朝鮮族이 중국의 少數民族의 한 단위민족으로서 그들의 언어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하고 능률을 極大化하여 민족발전을 促進한다는 의미에서도 전통성이나 순결성만을 강조하여 주춤거리는 것은 결코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총론적인 기초위에서 朝鮮族의 언어생활을 통일적으로 이끌면서 모든 社會현상에 적용하여 언어기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語彙規範을 세워야 할 것이 要望된다.

朝鮮族의 어휘 규범화에 있어 구체적으로 제시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論外로 하거니와 현재의 활동과 그 성격을 살펴보는 뜻에서 정경언

(1989)<sup>48)</sup>의 規範化 原則 試案을 옮겨 보기로 한다. 그는 총 8개 항의 원칙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1) 조선어의 어휘규범화는 조선어의 민족성, 과학성, 대중성의 요구에 맞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생명력 있는 기존어휘와 우리 민족 사이에 널리 쓰이는 어휘는 그 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부류의 어휘들이 속한다면,
  - 1) 이전부터 널리 써 왔고 이미 뿌리박은 기존 어휘 : 경쟁, 공업, 사회, 행복하다와 같은 말은 그대로 쓰되, 라선식을 타래식, 투봉 거리를 풀치거리, 등고선을 높이선, 둔각을 무둔각, 웃고름을 고름끈 등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한다.
  - 2) 해방후에 이루어져 남북에서 함께 쓰이는 말들 : 등기우편, 유도탄, 특수강, 공중촬영, 인공위성, 비닐, 로켓트 따위는 그대로 수용한다.
  - 3) 중국에서 산생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단어 : 국경일, 공안국, 사과배, 특급요원, 인민폐, 조학금, 양걸, 기공, 태극권 등은 차용 규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당연히 수용된다.
- (3) 우리말에서 쓰이는 단어들 중 동의적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언어 실정에 따라 쓰기 쉽고도 널리 쓰이는 것으로 가려 쓴다
  - 1) 어려운 한자어 어휘와 고유어휘가 대응되는 체계를 이루는 것들 : 밑면←基面, 가루←粉末, 손가락←手指, 키잡이←舵手, 벌떼←蜂群, 장마철←雨期……
  - 2) 남북에서 서로 다르게 쓰는 말들 : 싸인(O) - 씨누스(X), 코싸인(O)

48) 정경언: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범화에 대한 소견" 「조선학연구」 제1권 1989. 연변대학출판사, pp.325-328

- 꼬씨누스(X)……

병용해도 좋은 것들 : 서한체-편지체, 판서-칠판글씨, 암기-외우기, 계주-이어달리기, 헤딩-머리받기……

- (4) 어려운 한자어와 오래어는 되도록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刻板→새김판, 毛洗滌→털씻기, 石人→돌사람, 巨步→큰걸음, 水期→얼음철, 貯水塔→물탑, 乾咳→마른기침……

- (5) 조선어 어휘체계를 풍부히 할 수 있고 생명력이 있는 방언 어휘와 비표준어휘는 표준어휘로 받아들여야 한다.

묵직질, 신적질, 도기나무, 발두렁, 애동호박, 꼬까웃……

- (6)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서(주로 한어단어의 조선어음독어) 기존어휘 및 남북에서 쓰고 있는 단어와 대립되는 것은 후자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修改→修正, 수원→입원, 합수교육→통신교육, 수발신→접수신, 주교련→총지도, 관마교학→공개수업, 강화→연설, 특종강→특수강, 진수→연수……

- (7) 새명사, 슬어는 조선말 단어조성법에 맞게 만들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기존 언어재료로 만든 것 : 검은손, 종이범, 사상보따리,  
 눈보건체조, 선택과목, 투명통구판……

- 2) 다른 언어에서 받아 들인 것 : 농업사, 로간부, 인민대회당,  
 정신문명상, 운동건강, 기서문,  
 자치구역, 로켓트, 비닐, 컴퓨터,  
 콰이발, 양걸, 하다……

- (8) 인명, 지명, 국가명칭 등은 '원음에 따르고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에 좇아 처리한다.

이상의 원칙 규정을 보면 (2)에서 어휘구성의 기본조건을 기존어휘(고

유어는 물론 한자어까지 포함)와 남북의 공통어휘 그리고 차용규칙에 따라 차용된 새 한자어휘로 잡은 것은 별 異論이 없졌으며, 또한 (2), (4), (5)의 규정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6)의 규정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우리말을 주체로 한 기준에 따라 따진다면 전적으로 합당한 것이 되나, 언어 현장의 실정이 이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이것에 역행하는 경향이 우세하다면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하겠기 때문이다.

朝鮮族의 형성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受難史와 脈을 같이 하며 不幸했던 시대의 傷痕처럼 밑바닥에 깔린 울분과 아픔을 딛고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 凝集力은 남달랐으며 또한 民族的 自尊心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끈질기게 살아와 지금은 중국의 少數民族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公認받고 있다. 荒涼한 異國에서 민족이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한 生存權의 확보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투쟁적으로 전개됐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보편성을 가지면서 민족정신의 공통특질을 涵養하고 있는 民族語를 끝까지 지켜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求心點으로 하여 민족이 하나로 結集하는 共同體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은 朝鮮族이 民族과 民族語의 관계를 바로 洞察한 歷史意識의 발로였다. 그럴진대, 民族語는 언어, 그 자체의 능력을 뛰어넘는 큰힘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朝鮮族이 우리말을 대하는 愛情과 執念은 컸고 그것을 통하여 민족을 확인해 왔지만, 역시 중국 안의 朝鮮族은 주체민족인 漢族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制約에 매일 수 밖에 없으니, 언어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다시 말해서 朝鮮族은 二重言語者일 수 밖에 없으며, 漢語에 대하여 우리말은 언어섬의 특성으로 존재하여 한어의 干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그들의 말은 정치, 경제, 문화적 주체성을 전제로한 母國語와는 전혀 다른 언어사회의 구성조건을 가지는 동시에 여러가지 특수한 현실적 갈등에 직면한다. 全時代를 통하여 가장 큰 문

제가 되었던 것은 한어와의 대립의식에서 빛은 漢語化와 民族語化의 葛藤이었다. 그리고 이밖에 한자어의 증가현상이나 어휘 규범화에 있어서도 原則과 現實 사이에는 심한 乖離가 생겨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큰 부담을 안아야 했다.

漢語化와 民族語化의 대립은 중국의 少數民族政策과 直結된 문제로서 그 정책노선에 따라 변하는 可變的인 것이기 때문에 朝鮮族은 그 기반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民族共同體의 結束을 더욱 다지는 일과 함께 民族의 力量을 기르는 일에 힘을 기울여 왔다. 朝鮮族의 특수성으로 보아 漢語化를 철저히 배격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철저한 民族語化도 언어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는 면이 있어 非能率的인 虛構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조선족의 우리말은 역시 그 특수성을 기초로 하여 漢語化와 民族語化의 절충과 조화를 創出해 나가되, 漢語化를 極小化하는 기본입장을 지키면서 民族語化를 極大化해 나가는 제3의 言語規範化를 모색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 V. 結 論

延邊의 韓族은 韓民族의 한 部分임과 동시에 현재 中國人의 일부를 이루는 少數民族이며, 아울러 韓國과 中國의 문화적 接觸點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延邊 韓族의 역사적 實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접근하여 總合的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먼저 延邊 韓族社會가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民族史的 觀點에서 검토하고, 延邊 韓族이 中國의 일개 少數民族으로서 自治州를 건립 운영하게된 이념적 배경과 自治의 실행과정을 확인함과 동시에, 延邊 韓族이 中國안에서 漢族과 더불어 共存하면서 고유한 文化를 어떻게 유지 혹은 변용해 나갔는지를 그들의 言語生活과 言語의 특성을 통해 살펴 보았다.

序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國內에서는 延邊 韓族에 대한 研究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中國內 朝鮮族에 의한 몇몇 연구가 있다 하더라도 學問의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와 방향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基礎的 研究'의 수준을 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분야의 학문적 관심을 일깨워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기초로서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91년 6월에 延邊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되는 기본 資料와 기왕의 연구성과들을 수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한 現場調査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연구성과의 수집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나 몇가지 주요한 資料의 입수에는 실패하였고 현장조사 역시 매우 제한된 결과만을 얻었다. 특히 延邊朝鮮族自治州의 民族區域自治 實行에 대한 연구는 原則과 實際를 다함께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自治條例와 같은 특수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법제적 규정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다. 기존의 연구들도 모두 원칙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그 실천적 내용은 살피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기존연구의 이러한 한계가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